www.mpb.go.kr

2026년
기금존치
평가보고서

202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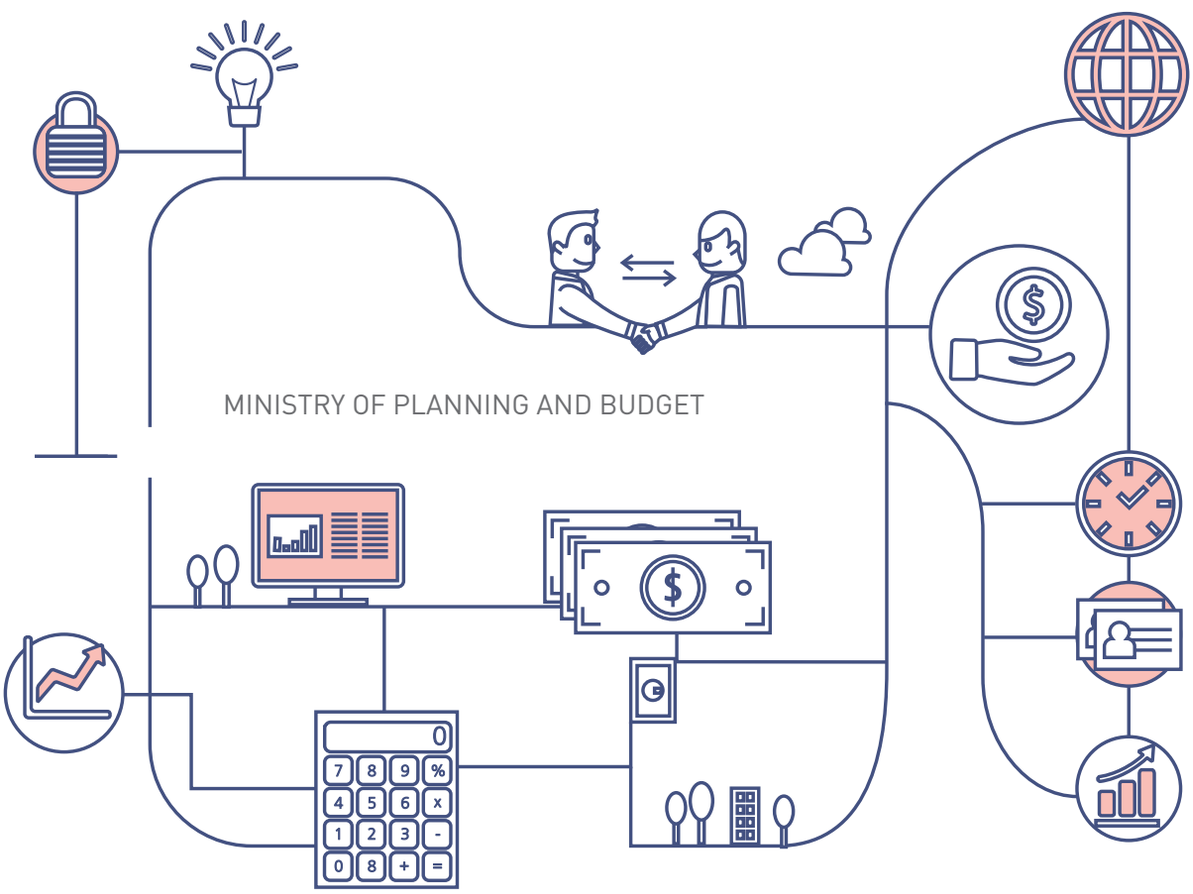

기획예산처
기 금 운 용 평 가 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목 차

Ⅰ. 2026년 기금존치평가 개요 ····· 1

1. 평가의 목적 ····· 1
2. 평가의 근거 ····· 1
3. 기금운용평가단 구성 및 운영 ····· 1
4. 기금존치평가 방법 ····· 4
5. 평가 대상기금 ····· 7

Ⅱ. 2026년 기금존치평가 평가결과 종합 ····· 8

1. 2026년도 평가 개요 및 특징 ····· 8
2. 평가 결과 ····· 8
3. 평가 향후 계획 ····· 10

Ⅲ. 2026년 기금별 기금존치평가 결과 ·····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정보통신진흥기금 ·····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방송통신발전기금 ····· 25

【국가보훈부】

3. 보훈기금 ····· 35

【국가유산청】

4. 국가유산보호기금 ····· 45

【국방부】

5. 군인복지기금 ····· 53

【기후에너지환경부】

6. 금강수계관리기금 ····· 61

7.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69

8.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76

9. 석면피해구제기금 ····· 80

1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87

11. 전력산업기반기금 ····· 95

12. 한강수계관리기금 ····· 102

【농림축산식품부】

13. 양곡증권정리기금 ····· 111

【문화체육관광부】

14. 관광진흥개발기금 ····· 117

15. 국민체육진흥기금 ····· 126

16. 문화예술진흥기금 ····· 132

17. 언론진흥기금 ····· 139

18. 영화발전기금 ····· 145

【법무부】

19.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53

【산업통상부】

20. 무역보험기금 ····· 163

21.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 169

【재정경제부】

22. 공공자금관리기금 ····· 179

23. 대외경제협력기금 ····· 183

【통일부】

24. 남북협력기금 ····· 193

Ⅰ. 2026년 기금존치평가 개요

1. 평가의 목적

○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기금 재원 구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기금 제도개선 및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 재정 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 경감에 기여함.

2. 평가의 근거

○ 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의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함.

- 이를 위해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및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에 의거하여 기금별 존폐 기준을 확립함.

3. 기금운용평가단 구성 및 운영

가. 추진경과

○ ’26년도 평가지침 통보(기획예산처 → 각 부처, ’26.1월)

○ 기금별 조사·평가 자료 접수(’26.2.28)

○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26.3.1~4.1)

○ 중간보고서 작성완료 및 기금 검토의견 수렴(’26.4.6.~4.22.)

○ 기금존치평가보고서(안) 제출(’26.5.15.)

○ 차관회의(’26.5.22.), 국무회의(’26.5.26.) 보고 후 국회제출(’26.5.29.)

나. 기금운용평가단 명단

○ 기금운용평가단은 단장 및 자산운용평가반, 존치평가반 등으로 구성됨.

<2026년 기금운용평가단>

구분	성 명 (출생)	소속 및 직위	학력 및 주요경력
단장	이준서 (1968)	동국대 교수 (경영학)	• 시러큐스대 박사(재무학) • 前 한국증권학회 회장
【자산운용평가】			
팀장 (5)	강경훈 (1968)	동국대 교수 (경영학)	• 메릴랜드대 박사(경제학)
	강소현 (1979)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카이스트대 박사(경영공학)
	김 솔 (1976)	한국외대 교수 (경영학)	• 카이스트대 박사(경영학)
	남재우 (1970)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카이스트대 박사(경영공학)
	이상엽 (1976)	경상국립대 교수 (경제학)	• 오하이오대 박사(금융경제학)
팀원 (11)	권경민 (1974)	홍익대 교수 (경영학)	• 미시간주립대 박사(재무학)
	김영도 (1973)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위스콘신대 박사(경제학)
	설 윤 (1973)	경북대 교수 (경영학)	• 미주리대 박사(경제학)
	이보미 (1982)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UT오스틴대 박사(재무학)
	이종섭 (1977)	서울대 교수 (경영학)	• 뉴욕대 박사(재무학)
	이창민 (1974)	한양대 교수 (경영학)	• 인디애나대 박사(경제학)
	이효섭 (1978)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카이스트대 박사(재무학)
	임형준 (1979)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컬럼비아대 박사(경제학)
	장봉규 (1974)	POSTECH 교수 (산업경영공학)	• 카이스트대 박사(수학)
	조은영 (1982)	충남대 교수 (경영학)	• 서울대 박사(재무학)
	홍기훈 (1980)	홍익대 교수 (경영학)	• 케임브리지대 박사(재무학)

구분	성 명 (출생)	소속 및 직위	학력 및 주요경력
【대규모팀】			
팀장 (1)	김상배 (1968)	경북대 교수 (경영학)	• 모나시대 박사(경영학)
팀원 (3)	박선영 (1982)	동국대 교수 (경제학)	• 예일대 박사(경제학)
	이동욱 (1971)	고려대 교수 (경영학)	• 오하이오주립대 박사(경영학)
	한상용 (1979)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워싱턴주립대 박사(재무학)
【기금존치평가】			
반장 (1)	김지영 (1979)	인천대 교수 (동북아국제통상학)	• 위스콘신대 박사(경제학)
팀장 (2)	김선엽 (1969)	이정회계법인 대표	• 서울시립대 박사(재무관리)
	정일환 (1977)	성군관대 교수 (행정학)	• 시라큐스대 박사(행정학)
팀원 (12)	강지원 (1975)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이화여대 박사(사회복지학)
	고동환 (1980)	국방대 교수 (국방경제학)	• 럿거스대 박사(경제학)
	나경덕 (1984)	삼화회계법인 회계사(이사)	• 성균관대 학사(경영학)
	신상화 (1980)	충남대 교수 (무역학)	• 미시간대 박사(경제학)
	신승용 (198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양대 박사(기술경영)
	신헌태 (1983)	제주대 교수 (행정학)	• 서울대 박사(정책학)
	이선호 (1981)	한남대 교수 (경제학)	• 고려대 박사(경제학)
	임성묵 (1972)	동국대 교수 (경영학)	• 서울대 박사(경영과학)
	장영욱 (198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런던정경대 박사(경제학)
	전성헌 (1981)	회계법인 대평 회계사(이사)	• 국민대 학사(경영학)
	한혜진 (1977)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시간대 박사(환경학)
	현보훈 (198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중앙대 박사(경제학)

4. 기금존치평가 방법

가. 평가지표의 구성

○ 존치평가 지표는 기금존치의 타당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등 2개의 지표로 구성됨.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지표는 기금목적의 유효성 및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을 평가

- 기금의 목적이 현재에도 유효하며,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의 중장기 운용계획이 기금 목적과 부합하며, 중장기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충분한지에 대해 평가

-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기금 자체의 설치목적이 타 기금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은지에 대해 평가

- 정부정책, 특별법 등 예외적으로 기금으로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평가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지표는 기금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조성방법 적정성 및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을 평가

- 기금의 자체수입비중,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 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연계성 등을 바탕으로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을 평가

- 기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과거 실적 및 향후 추계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기금 규모를 산출하여, 현재 기금 규모와 비교·평가

○ 각 평가지표는 지표별로 구성된 세부평가지표 안에 제시된 <평가내용>과 <작성내용>으로 구성됨.

- <평가내용>은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지 평가의 목표와 기준을 설명

- <작성내용>은 각 평가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

나. 평가결과

○ 평가결과는 세부평가지표별 평가에 따라 기금존치의 타당성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에 대해 각각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기금의 종합적인 총평을 제시함.

- 1 기금존치의 타당성 : (기금)존치/조건부존치/통합/폐지

- 2 재원구조의 적정성 : (재원구조의 적정성)적정/부적정
  - (재원조성방법)적정/부적정
  - (중기가용자산 규모)적정/과다/과소

다. 평가결과 후속조치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에 대해 추진사항 및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기금 또는 기관 전용 홈페이지에 공시함.

참고 1 기금 존치평가 기준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평가기준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①-1 기금목적의 유효성	ⅰ.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금의 설치목적이 유효한가? ⅱ.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의 중장기 운용계획이나 방향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하는가? ⅲ.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이 설치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가?
	①-2 타기금과의 유사성·중복성	ⅰ.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기금 자체의 설치목적이나 역할이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은가?
	①-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ⅰ. 정부정책, 특별법 등 예외적으로 기금으로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ⅱ. 기금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②-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ⅰ. 기금의 과거 5개년 및 향후 3년 누적의 자체수입이 동기간 [사업비+기금운영비+공자기금이자상환+차입금이자상환]의 2/3 이상인가? ⅱ. 기금의 과거 5개년 및 향후 3년 누적의 총 수입에서 동기간 정부내부수입과 차입금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하인가?
	②-2 중기가용 자산규모의 적정성	ⅰ. 기금이 중기가용자산을 적정규모만큼 보유하고 있는가?

5. 평가 대상기금

○ (기금존치평가부문) 총 67개 기금 중 24개 기금에 대하여 평가함.

-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일부 평가 실익이 없는 기금*은 해당 지표에 대해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공공자금관리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26 기금존치평가 대상기금 : 24개〉

유 형	기 금 명
존치1팀 (11개)	공공자금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무역보험기금, 언론진흥기금, 보훈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존치2팀 (13개)	양곡증권정리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Ⅱ. 2026년 기금존치평가 평가결과 종합

1. 2026년도 평가 개요 및 특징

○ 기금의 설치목적이 명확한 계정성기금에 대해 서면평가만 시행함

- 평가대상 기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설치목적이 명확하고 자금관리 이외의 별도의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기금존치평가에 대한 실익이 적어 서면평가만 실시

- 평가대상기금 24개 중 2개 기금을 제외한 22개 기금에 대해서는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시행

2. 평가 결과

가. 기금존치의 타당성

○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2개 기금 통합, 4개 기금 조건부존치 권고

- 기금의 구조적 유사성이 지속되어 지속적으로 통합논의가 진행되어 온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 권고

- 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 구성 재편이 필요하거나, 재원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조건부존치 권고

나. 재원구조의 적정성

○ 계정성 및 연금성 기금은 재원구조의 적정성지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기금에 대해 세부 평가지표인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평가 제외

- 서면평가만 진행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 제외

-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을 지속 적립해야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평가제외

○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대상 22개 기금 중 16개 기금은 부적정, 6개 기금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 자체수입이 부족하거나 정부전입금 등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원조성방법이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된 기금은 5개 기금

<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부적정 기금 >

◇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②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평가 결과 9개 기금은 여유, 7개 기금은 과소한 것으로 평가

- (중기가용자산 여유 기금) 자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권고

< 중기가용자산 규모 여유 기금 >

◇ 국민체육진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언론진흥기금, 군인복지기금, 보훈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 (중기가용자산 과소 기금) 재원확보 방안 마련, 사업정비를 통한 지출조정, 부채상환 등 권고

< 중기가용자산 규모 과소 기금 >

◇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3. 평가 향후 계획

○ 본 평가를 통해 제시된 권고 및 지적사항 등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Ⅲ. 2026년 기금별 기금존치평가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정보통신진흥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		
설 치 년 도	1993년	운용개시년도	1993년
주 무 부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 리 방 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평가결과 요약표

1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통합	본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설치목적, 재원 구조 및 정책 추진체계 측면에서 구조적 유사성이 지속되고 있어 통합이 필요함. 세부사업 차원의 중복 해소 노력이 있었으나, ICT 관련 사업이 양 기금 중 어느 기금으로도 편성·추진될 수 있는 구조적인 유사성은 여전히 존재함. 향후 관계부처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통합에 대한 검토와 함께 통합 이후 재원 배분 구조, 방송분야 지원 축소 우려 해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단일 기금 통합 방안 외에도, 방송 관련 기능은 별도 기금으로 유지하고 통신 관련 기능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통합하는 방식의 기금 체계 재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본 기금은 주파수할당대가와 융자금원리금 회수 등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체수입비중은 적정 기준보다 미흡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하지만, 중기가용자산을 과소하게 보유하고 있음.

3. 존치평가 총평

□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에 따라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다. 기금은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보급, 정보통신 관련 인력 양성,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용도로 하며, 그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4조에 두고 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위탁관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산업 全 분야 AX 촉진 및 글로벌 진출 지원, AI·디지털 시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민생 지원 강화 등을 중장기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 양자산업 수요연계형 실증,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AI통합바우처 등의 48개 세부사업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 본 기금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보급, 정보통신 관련 인력 양성,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등 정보통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금목적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세부사업 역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세부사업은 사업의 지속성, 타 재원과의 역할 분담,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 방지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정보통신진흥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비교할 때 기금 자체의 설치목적, 재원 구조 및 정책 추진체계 측면에서 구조적 유사성이 존재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 AI 확산, ICT 융복합 등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간 경계가 약화되면서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이 양 기금에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ICT 관련 사업이 양 기금 중 어느 기금으로도 편성·추진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간 세부사업 이관·조정 등을 통해 직접적인 사업 중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이러한 조정만으로는 기금 간 유사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양 기금의 통합 필요성은 이전 존치평가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실질적인 후속 대응은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단일 기금으로의 통합에 대한 검토와 함께, 통합 이후 재원 배분 구조, 방송분야 지원 축소 우려 해소, 공공성 기능 유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본 기금은 재원구조의 적정성 측면에서, 재원조성방법은 적정하다. 자체수입비중(2021~2028년 누적 평균)은 63.62%로 적정 기준보다 미흡한 수준이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35.18%로 적정 기준을 충족한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 및 국가 디지털대전환 대응을 위한 ICT분야 투자 확대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기가용자산규모는 -282,982백만원으로 적정 범위를 하회하여 과소한 상태이며, 디지털대전환 대응 지출로 인한 대규모 차입금으로 인하여 자본잠식 상태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자체수입원이 주파수할당대가로 동일하고 지원을 하는 대상 역시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두 기금 사업의 중복성, 지원의 대상 등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사업비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주파수할당대가를 납부하는 대상의 추가, 주파수할당대가의 배분비율의 변화, 추가적인 자체수입의 발굴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

□ 본 기금은 향후 기금 간 구조적 유사성 문제를 해소하고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토대로 통합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본격화하고, 통합 이후 재원 배분 구조, 방송분야 지원 축소 우려 해소, 공공성 기능 유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국회 발의안과 같은 단일 기금 통합 방안 외에도, 방송 관련 기능은 별도로 유지하고 통신 관련 기능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재편하는 방식 등 다양한 기능 통합·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보급, 정보통신 관련 인력 양성, 정보통신 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등 정보통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금목적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AI 중심 산업구조 재편 등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 진흥을 위한 기금의 역할은 유효함.

○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 양자산업 수요연계형 실증,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AI통합바우처 등 48개 세부사업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 타 재원과의 역할 분담,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 방지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생성형 AI기반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센터, 지역특화 AI 공간컴퓨팅 육성 등 2026년 단년도 사업은 기금의 설치목적과의 관련성은 인정되나, 지방비 매칭이 반영된 지역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진흥기금보다는 균특회계를 통한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선AX특화 AI 모델하우스 구축·실증, AI선박 특화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실증 등은 AI 기반 산업전환 지원이라는 점에서 기금 목적과의 관련성은 있으나, 산업부 사업과의 중복 또는 유사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부처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중복 방지방안 및 협업·연계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정보통신진흥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비교할 때, 기금 자체의 설치목적, 재원 구조 및 정책 추진체계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함.

- 양 기금은 각각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설치되었으나, 디지털 전환과 AI 확산, ICT 융복합 등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간 경계가 약화되면서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음.

-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기금의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이 양 기금에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어 ICT 관련 사업이 양 기금 중 어느 기금으로도 편성・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 단위의 구조적 유사성이 존재함.

○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그간 세부사업 이관・조정 등을 통해 직접적인 사업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조정 노력은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음.

- 기금 간 세부사업 재편과 역할 조정을 통해 동일・유사 사업의 중복 편성을 줄여온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개별 세부사업 단위의 중복성 문제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일한 정책목표와 재원 구조 하에서 ICT 관련 사업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어느 기금으로도 편성・추진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세부사업 차원의 조정만으로는 기금 간 유사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음.

- 국회에 발의(이해민의원 대표발의, 2024.7.)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

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안 이유에서도 두 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및 사업 범위가 유사하다는 점을 통합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국회 발의 등 기금 통합을 위한 제도적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대응은 전반적으로 미온적인 것으로 판단됨.

- 기금 통합 시 방송 분야 지원이 소외될 우려, 통신사 영향력 확대 우려, 현행 기금 운용의 합리화 선행 필요성 등이 함께 제기된 바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통합 이후 재원 배분 구조 설계, 방송 분야 지원 축소 우려 해소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후속 대응을 충분히 구체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2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 수입 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R&D기술료, 융자원금 회수액등으로 구성되어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주파수할당대가의 25%가 일시납으로 징수가 되며, 이후 균등분할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일시납을 하는 해에는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며, 이후에는 수입이 급감하는 특징이 있음.

○ 과거5개년(2021~2025년) 및 향후3년(2026~2028년) 누적 자체수입 합계는 경상지출 대비 63.62%로 미흡함.

- 자체수입의 비중이 2022년이후 37.1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2021~2028년 누적 자체수입합계는 63.62%로 미흡함.

- 2028년에는 자체수입비중이 82.92%로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추정됨.

○ 본 기금의 2021~2028년 누적 차입금 및 정부내부수입비중은 35.18%로 적정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차입금의 규모는 3조원으로 현재 자본 잠식 상태임.

- 2020년 코로나19 대응 및 국가 디지털대전환 대응을 위한 ICT분야 투자 확대로 차입금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30년도부터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을 시작해야 함.

○ 2025년말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282,982백만원으로 적정 기금규모를 하회하여 과소한 상태임.

- 본 기금의 적정규모는 최소 258,649백만원 ~ 최대 1,118,561백만원의 최소규모를 하회하여 과소한 상태임.

○ 중기가용자산이 적정 범위 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함.

-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자체수입원이 주파수할당대가로 동일하고 지원을 하는 대상 역시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 두 기금의 사업의 중복성, 지원의 대상 등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사업비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주파수할당대가를 납부하는 대상의 추가, 주파수할당대가의 배분비율의 변화, 추가적인 자체수입의 발굴을 모색할 것을 권고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방송통신발전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		
설 치 년 도	2000년	운용개시년도	2000년
주 무 부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금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 리 방 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평가결과 요약표

1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통합	본 기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설치목적, 재원 구조 및 정책 추진체계 측면에서 구조적 유사성이 지속되고 있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오랜기간 지속되었음. 최근 급속한 방송환경변화로 인하여 방송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경계가 없어지고, 대중적인 방송이 인터넷망을 통하여 확산되면서 정보통신산업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됨. 이에 따라 본 기금의 목적이 매우 약화되었으므로 본 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통합하여 산업구조 재편에 맞는 기금운용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적정	본 기금은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함. 중기가용자산 규모는 적정하지만, 장기차입금 중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입금을 현시점의 가용자산으로 평가한 결과이며, 부채/자산 비율이 391.4%로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함.

3. 존치평가 총평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치한 기금이다. 기금은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보급,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 공익·공공 목적의 방송통신 지원 등을 용도로 하며, 그 법적 근거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 두고 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종합유선·위성·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홈쇼핑사업자의 분담금,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위탁관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산업 全 분야 AX 촉진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중장기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안전하고 활력 있는 국민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 하에 안전한 환경 조성, 산업 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 등을 중장기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콘텐츠 진흥, ICT 창의기업 육성, AI기반가상융합산업육성,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등의 72개 세부사업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 본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표준의 개발·제정·보급, 인력 양성, 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 공익·공공 목적의 방송통신 지원 등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금목적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세부사업 역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세부사업은 재원과 지원 대상 간 정합성, 단년도 사업의 성과 활용계획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비교할 때 기금 자체의 설치목적, 재원 구조 및 정책 추진체계 측면에서 구조적 유사성이 존재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 AI 확산, ICT 융복합 등에 따라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간 경계가 약화되면서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이 양 기금에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ICT 관련 사업이 양 기금 중 어느 기금으로도 편성·추진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간 세부사업 이관 및 조정 등을 통해

직접적인 사업 중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이러한 조정만으로는 기금 간 유사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양 기금의 통합 필요성은 이전 존치평가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실질적인 후속 대응은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최근 급격한 방송환경변화로 인하여 방송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경계가 없어지고, OTT서비스의 확산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중복성이 외형적으로 해소되었다 하여도 그 기저에 있는 기술산업은 유사성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중적인 방송이 인터넷망을 통하여 확산되면서 정보통신산업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본 기금의 목적이 매우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통합하여 산업구조재편에 맞는 기금운용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본 기금은 재원구조의 적정성 측면에서, 재원조성방법은 적정하다. 자체수입비중(2021~2028년 누적 평균)은 74.85%로 적정 기준을 충족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23.01%로 적정 기준을 충족한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 및 국가 디지털대전환 대응을 위한 ICT분야 투자 확대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중기 가용자산은 206,276백만원으로 적정 범위에 있으나, 이는 장기차입금 중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입금을 현시점의 가용자산으로 평가한 결과이며, 부채/자산 비율이 391.4%로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디지털대전환 대응 시 지출을 위한 차입금이 2030년도부터 만기상환을 시작하고, 주파수할당대가의 연도별 변동성을 감안하여 차입금상환 및 사업비 지출에 대한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본 기금은 향후 기금 간 구조적 유사성 문제를 해소하고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토대로 통합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본격화하고, 통합 이후 재원 배분 구조, 방송분야 지원 축소 우려 해소, 공공성 기능 유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국회 발의안과 같은 단일 기금 통합 방안 외에도, 방송 관련 기능은 별도로 유지하고 통신 관련 기능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재편하는 방식 등 다양한 기능 통합·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표준의 개발·제정·보급, 인력 양성, 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 공익·공공목적의 방송통신 지원 등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금목적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 디지털 전환, AI 확산 등으로 방송통신 산업 및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함.

- 다만, 최근 급속한 방송환경변화로 인하여 방송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경계가 없어지고, 방송산업도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방송통신 지원이 정보통신산업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음.

- 즉 기금목적의 유효성은 인정되지만, 방송산업의 변화, 기금의 운용을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정보통신발전기금과의 중복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방송관련 기금사업은 특정 공익방송사업에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방송콘텐츠 진흥, ICT 창의기업 육성, AI기반가상융합산업육성,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등의 72개 세부사업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과 지원 대상 간 정합성, 성과 활용계획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OTT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OTT 시청의 보편화로 방송통신콘텐츠의 유통구조가 OTT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인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목적에 부합함. 다만, 주요 OTT 사업자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직접적인 재원 부담 주체는 아니라는 점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야 하는 차별적 필요성이 충분한지, 일반회계를 통한 지원이 보다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방송·통신 쇼핑 이용자 보호 연구 용역 사업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단년도 사업의 특성상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 결과가 향후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이용자 보호 체계 고도화 등으로 구체적으로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활용계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비교할 때, 기금 자체의 설치목적, 재원 구조 및 정책 추진체계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함.

- 양 기금은 각각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설치되었으나, 디지털 전환과 AI 확산, ICT 융복합 등에 따라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간 경계가 약화되면서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음.

-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기금의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이 양 기금에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어 ICT 관련 사업이 양 기금 중 어느 기금으로도 편성·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 단위의 구조적 유사성이 존재함.

○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그간 세부사업 이관·조정 등을 통해 직접적인 사업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조정 노력은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음.

- 기금 간 세부사업 재편과 역할 조정을 통해 동일·유사 사업의 중복 편성을 줄여온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개별 세부사업 단위의 중복성의 문제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일한 정책목표와 재원 구조 하에서 ICT 관련 사업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중 어느 기금으로도 편성·추진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세부사업 차원의 조정만으로는 기금 간 유사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음.

- 국회에 발의(이해민의원 대표발의, 2024.7.)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안 이유에서도 두 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및 사업 범위가 유사하다는 점을 통합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국회 발의 등 기금 통합을 위한 제도적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대응은 전반적으로 미온적인 것으로 판단됨.

- 기금 통합 시 방송 분야 지원이 소외될 우려, 통신사 영향력 확대 우려, 현행 기금 운용의 합리화 선행 필요성 등이 함께 제기된 바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통합 이후 재원 배분 구조 설계, 방송 분야 지원 축소 우려 해소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후속 대응을 충분히 구체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본 기금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하여,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에 기여하고 있으며, 허위정보 대응 및 공정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등은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 수입 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및 보증금,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등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과거 5개년(2021~2025년) 및 향후 3년(2026~2028년) 누적 자체수입 합계는 경상지출 대비 74.85%로 적정함.

- 주파수할당대가를 일시납으로 25%를 수령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체수입비중이 138.54%까지 증가함. 주파수할당대가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출 계획이 필요함.

○ 본 기금의 2021~2028년 누적 차입금 및 정부내부수입비중은 23.01%로 적정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차입금의 규모는 1.84조원으로 현재 자본 잠식 상태임.

- 2020년 코로나19 대응 및 국가 디지털대전환 대응을 위한 ICT분야 투자 확대로 차입금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30년도부터 상환의 시작됨.

○ 2025년말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206,276백만원으로 적정함.

- 본 기금의 적정규모는 최소 132,119백만원 ~ 최대 558,858백만원 최소범위를 하회하여 과소한 상태임.

- 단, 장기차입금 중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입금을 현시점의 가용자산으로 평가한 결과이며, 부채/자산 비율이 391.4%로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함

○ 중기가용자산이 적정 범위 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함.

- 차입금은 2030년도부터 만기상환을 시작하고, 주파수할당대가의 연도별 변동성을 감안하여 차입금 상환 및 사업비 지출에 대한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

국 가 보 훈 부

3. 보훈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보훈기금법」 제1조(목적)		
설 치 년 도	1981년	운용개시년도	1981년
주 무 부 처	국가보훈부	기금관리주체	국가보훈부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본 기금은 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 지원이라는 제한된 목적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기금과의 중복성이나 유사성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됨. 특히, 고령독거유공자AI기반안부확인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보훈부가 사각지대를 발굴·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보훈기금은 88골프장 운영수입, 대부원리금 회수, 복권기금 전입금, 예탁이자 수입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며, 자체수입비중('21~'28년 평균)은 158.78%로 적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6.08%로 적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중기가용자산 규모는 과다 상태임.

3. 존치평가 총평

□ 보훈기금은 「보훈기금법」 제1조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 설치되었다. 본 기금은 동법 제6조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88골프장운영수입, 대부원리금 회수, 기금예탁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복권기금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운영,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기금수익사업, 참전제대군인지원, 제대군인대부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본 기금의 2025년 기준 수입은 2,086억원이고 지출은 2,141억원이다.

□ 본 기금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88골프장운영수입, 대부원리금 회수 등을 재원으로 하여 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 지원이라는 제한된 사업목적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은 없다. 2026년도 신규사업인 ‘고령 독거유공자AI기반안부확인서비스’ 세부사업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과의 중복성을 지속 점검하면서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보훈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복지지원, 보훈요양시설 운영, 대부지원, 88골프장 운영을 통한 기금증식사업 등이 있다. 재원구조의 적정성 측면에서, 재원조성방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보훈기금의 자체수입 비중(‘21 ~ ‘28년 누적 평균)은 158.78%로 적정 기준을 충족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6.08%로 적정하다. 다만, ‘26 ~ ‘27년 자체수입 계획에는 88골프장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매각 결정 이후 현재까지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골프장매각대를 자체수입에서 제외하여 계산하였다. 반면 중기가용자산은 516,921백만원으로 적정 범위를 크게 초과하여

과다 상태이다. 중기가용자산 과다 해소를 위한 지출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 보훈복지 인프라 확충 투자와 재가복지서비스 고도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사업 등 신규 복지 수요에 대응한 지출 계획을 구체화하고, 중기가용자산이 적정 범위 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88골프장의 매각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을 조속히 확정하여 기금 수입 계획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 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훈기금은 88골프장운영수입, 대부원리금 회수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제한된 목적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은 없어 기금의 존치가 타당하다. 고령독거유공자AI기반안부확인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체계가 지속 요구된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보훈기금은 「보훈기금법」 제1조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설치된 것으로, 동법 제6조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 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동 기금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운영,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기금수익사업, 참전제대군인지원, 제대군인대부지원은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함.

○ 2026년도 신규사업인 ‘고령독거유공자AI기반안부확인서비스’ 세부사업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과의 중복성을 지속 점검하면서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은 「보훈기금법」의 설치 목적인 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보훈부 차원의 사업 운영·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신청주의에 의하고 있고 사업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보훈기금은 88골프장운영수입, 대부원리금 회수 등을 재원으로 하며,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운영,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기금수익사업, 참전제대군인지원, 제대군인대부지원은 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 지원이라는 제한된 사업목적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은 없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 수입 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88골프장운영수입, 대부원리금 회수, 예탁이자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안정적인 수입원을 보유하고 있음.

○ 과거 5개년('21 ~ '25년) 및 향후 3년('26 ~ '28년) 누적 자체수입 합계는 경상지출 대비 158.78%로 적정함.

- '26~'27년 자체수입에는 88골프장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매각대금을 자체수입에서 제외함

- 88골프장 운영 및 매각과 관련하여 기금 내부에서는 매각보다는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음.

- 골프장의 운영을 통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골프 산업 전망 연구, 내장객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사업분석이 필요함.

○ 본 기금의 '21~'28년 누적 차입금 및 정부내부수입 비중은 6.08%로 적정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25년말 보훈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516,921백만원으로 적정 기금규모를 상회하여 과다한 상태임.

- 본 기금의 적정규모는 최소 88,964백만원 ~ 최대 105,494백만원으로 최대범위를 상회하여 과다한 상태임

○ 중기가용자산이 적정 범위 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함.

- 88골프장이 중기가용자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의 매각 여부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속 운영 또는 매각에 관한 최종 결정을 조속히 확정하여 기금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함.

국 가 유 산 청

4. 국가유산보호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		
설 치 년 도	2010년	운용개시년도	2010년
주 무 부 처	국가유산청	기금관리주체	국가유산청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본 기금은 국가유산의 공공성과 보존·관리의 필요성에서 설치목적이 유효하고, 타 기금과의 차별성 및 세부사업의 설치목적 부합성이 인정되어 존치로 평가함. 다만,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성과지표의 객관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적정	본 기금은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 정부출연금 및 차입금 비중이 적정하며, 적정규모의 중기가용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3. 존치평가 총평

□ 국가유산보호기금은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라 2010년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설치·운영되었으며, 2024년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 체재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본 기금은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9개 단위사업에 걸쳐 15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예방적 국가유산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대의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속에서 여전히 유효하며, 수행 중인 15개 세부사업도 모두 기금의 설치목적과 직접적으로 부합된다. 또한, 본 기금은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과 유연한 재원 운용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금으로서의 존치 타당성이 인정된다.

□ 다만,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사업과 일반회계 사업 간 명확한 역할 분담 기준을 설정하고, 중복·유사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전문가 평가에 기반한 프로그램별 성과지표는 사업의 효과성보다 정책 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집중되어 있어 개별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량적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전문가 평가의 평가항목 및 산출방식 등을 구체화하여 성과지표의 객관성과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본 기금은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 정부출연금 및 차입금 비중이 적정하며, 적정규모의 중기가용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설치목적은 여전히 유효함.

- 국가유산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공공재로서 민간의 자발적 보존·관리 유인이 제한적이므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국가 정체성 및 문화자산으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로 국가유산의 재난 피해가 확대되고 복구를 위한 재정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적 국가유산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또한, 국민의 문화향유에 대한 수요 증가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향유기반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과 공존·상생하는 국가유산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에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설치목적은 현시점에도 유효함.

○ 본 기금은 국가유산 활용 기반 조성, 국가유산 안전체계 관리 강화, 국가유산 활용 활성화 등 9개 단위사업에 걸쳐 15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세부사업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함. 다만, 일부 사업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정이 필요하며, 프로그램별 성과지표는 사업별 실질적인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됨.

- 본 기금은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과 유연한 재원 운용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금 존치의 타당성이 인정됨. 그러나

국가유산활용 활성화, 교육연구전시 등의 단위사업별 내역사업 중 일부는 일반회계 사업과의 기능적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아 유사·중복 지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이에 기금사업과 일반회계 사업 간 명확한 역할 분담 기준을 설정하고, 중복·유사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별 성과지표는 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정책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의 수립·추진·사업 결과에 따른 평가 항목을 포함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설문의 형태가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전반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평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개별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설문 문항이 사업의 효과성보다 정책 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집중되어 있어 성과지표로서의 객관성과 활용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사업별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정량적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전문가 평가의 평가 항목, 산출 방식, 활용 기준을 구체화하여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국가유산보호기금은 설치목적과 사업 영역 및 내용 면에서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수입비중도 적정함.

- 본 기금은 복권기금전입금(법정배분), 문화재관람료 수입, 여유자금의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의 2025년 자체수입비중은 107.29%이며, 분석기간(2021년부터 2028년까지) 동안의 평균 자체수입비중도 100.92%로 적정함.

- 본 기금의 자체수입비중은 공자기금 예수금 증가로 2021년에 72.70%까지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는 복권기금전입금이 전년대비 51.3% 증가하는 등으로 자체수입비중도 102.48%를 회복하였음.

- 2026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자체수입 확보가 예상됨에 따라 분석기간 동안 평균 자체수입비중은 2/3을 초과하여 적정함.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함.

- 2018년 이후 정부내부수입은 없으며 차입금은 공자기금예수금을 통해 일부 조달하였음.

- 총수입에서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의 비중은 2021년의 경우 26.45%이며, 2022년부터는 0.00%로 나타나 분석 대상기간 평균은 7.16%로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함.

○ 본 기금은 주요 재원을 복권기금 전입금 이외에 문화재관람료 수입 등의 자체수입 등으로 마련하여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문화유산 교육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입재원과 기금사업 간의 연계성이 인정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ㅇ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규모는 적정함.

- 본 기금의 적정규모는 최소기준 -1,428백만원, 최대기준 37,376백만원으로 평가되며, 중기가용자산은 27,143백만원으로 적정함.

-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4.13%로 위험한 수준에 근접함.

- 다만, 향후 자체수입이 경상지출보다 지속적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공자기금예수금 상환을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부채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국 방 부

5. 군인복지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목적)		
설 치 년 도	1996년	운용개시년도	1996년
주 무 부 처	국방부	기금관리주체	국방부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본 기금은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향상을 위한 제한된 목적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기금과의 중복성이나 유사성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계정 간 가용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원 운용 및 기금구조 개선, 골프장 사업 수익 등 기금수익 확대 및 복지사업 재원의 다양화, 골프장 사업과 기금의 설치 목적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재원활용 구조의 개선, 군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과 관사 확보 정책과의 상호 정합성 확보가 요구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본 기금은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하지만, 중기가용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음.

3. 존치평가 총평

□ 군인복지기금은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군 복지사업을 통해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설치되었다. 본 기금은 동법 제3조의2에 근거하여 복지계정, 주거지원계정, 학자금대부계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운영 수입금 및 관유물 대여료,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융자원금회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장병복지향상, 부대운영지원, 장학및취업활동지원, 전세자금융자, 학자금대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본 기금의 2025년 기준 수입은 7,763억원이고 지출은 6,776억원이다.

□ 본 기금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군 복지시설 운영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향상이라는 제한된 사업 목적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은 없다. 다만, 현재의 기금운용 구조에서 계정 간 가용자산 불균형 발생으로 기금 목적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장병복지향상’ 단위사업에서 군 간부 중심의 복지사업 성격이 강한 골프장 사업은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군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군 간부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적 자체는 타당하나, 기금 목적 달성 측면에서 관사 확보 정책 수단과의 정합성 확보가 요구된다.

□ 본 기금은 재원구조의 적정성 측면에서, 재원조성방법은 적정하다. 자체수입비중(‘21 ~ ‘28년 누적 평균)은 110.13%로 적정 기준을 충족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15.96%로 적정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주거지원정책이 전세자금 원금대부에서 이자지원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발생하면서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중기가용자산은 580,651백만원으로 적정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과다 상태로, 과다분 해소를 위해 ‘25년 복지계정 6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과다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즉, 복지계정은 가용자산이 과다하여 공자기금에 예탁을 하는 반면, 주거지원계정은 반대로 공자기금에서 예수를 하고 있다. 계정간 재원이동에 제약이 있어 한 기금내에서 공자 예탁과

예수가 동시에 발생하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계정간 사업 분류를 복지, 주거지원 등 분야별이 아닌 수혜자 대상(일반 장병, 군간부 등)별로 구분할 경우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인복지기금은 군 복지시설 운영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제한된 목적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은 없어 기금의 존치가 타당하다. 다만, 계정 간 가용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원 운용 방식 개선, 골프장 사업의 기금의 설치 목적과의 정합성 강화, 군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과 관사 확보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가 요구된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군인복지기금은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군 복지사업을 통해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동법 제3조의2에 근거하여 복지계정, 주거지원계정, 학자금대부계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동 기금에 따른 장병복지향상, 부대운영지원, 장학및취업활동지원, 전세자금융자, 학자금대부 사업은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함.

○ 다만, 기금운용 구조가 계정 분리 및 재원 운용 방식 측면에서 기금 목적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됨.

-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 주거지원계정, 학자금대부계정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복지계정과 주거지원계정 분리에 따른 계정 간 재원 활용이 제한되고 있음.

- 주거지원계정의 경우 2025년 일반회계 전입금(67,055백만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어, 기금 본래의 특정 재원에 기반한 자율적 운용이라는 취지와 괴리가 발생함.

-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계정 간 전입 제한으로 인해 내부 재원 조정 기능이 제약되고 있어, 신축적 자금 운용이라는 기금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장병복지향상’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인 ‘복지시설운영’ 및 ‘복지시설확보’에서 골프장 사업은 군인의 체력단련이 주목적인 체육시설이나, 간부 중심의 복지사업 성격이 강함. 그럼에도 민간 개방 및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수익 확대를 통해 기금의 재원 확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 골프장 사업을 통해 체력단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기금의 설치 목적과의 정합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익 확대를 위해 이용료 인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즉, 골프장 사업은 군 복지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체력단련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수익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군 간부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적 자체는 타당하나, 기금 목적 달성 측면에서 관사 확보 정책 수단과의 정합성 확보가 요구됨.

- 중장기적으로 관사 확보 정책과의 연계 없이 단기적 금융지원 방식으로 운영이 지속되는 경우 기금 사업이 구조적 주거문제 해결이 아닌 보조적 재정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군인복지기금은 군 복지시설 운영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며, 장병복지향상, 부대운영지원, 장학및취업활동지원, 전세자금융자, 학자금대부 사업은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향상이라는 제한된 사업목적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은 없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⑵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 수입 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은 군마트 운영수입, 체력단련장 입장료 등으로 구성되어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과거 5개년('21 ~ '25년) 및 향후 3년('26 ~ '28년) 누적 자체수입 합계는 경상지출 대비 110.13%로 적정함.

○ 본 기금의 '21 ~ '28년 누적 차입금 및 정부내부수입 비중은 15.96%로 적정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25년말 군인복지기금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580,651백만원으로 적정 기금규모를 상회하여 과다한 상태임.

- 본 기금의 적정규모는 최소 -2,889백만원 ~ 최대 92,530백만원 최대범위를 상회하여 과다한 상태임

○ 중기가용자산이 적정 범위 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함.

- 복지계정은 가용자산이 과다하여 공자기금에 예탁을 하는 반면, 주거지원계정은 반대로 공자기금에서 예수를 하고 있음. 계정간 재원이동에 제약이 있어 한 기금내에서 공자 예탁과 예수가 동시에 발생하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계정간 사업 분류를 복지, 주거지원 등의 분야별이 아닌 수혜자 대상(일반 장병, 군간부 등)별로 구분할 경우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기후에너지환경부

6. 금강수계관리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설 치 년 도	2002년	운용개시년도	2002년
주 무 부 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금관리주체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2. 평가결과 요약표

1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본 기금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상수원보호 규제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제도적 존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오염자부담 영역인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이 기금의 50.5%(589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운영비(337억원)가 설치비(252억원)를 초과하는 등 수익자부담 원칙에 기반한 물이용부담금의 지원 수준이 과다한 측면이 있음. 또한 2023~2024년 법·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용도가 확대되었으나 2026년 예산에 신규 용도에 대한 별도 사업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아 확대된 용도와 부과체계 간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기금 용도의 재정렬, 환경기초시설 지원 기준의 합리화, 성과 기반 관리체계 도입을 조건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2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이 적정하지만 중기가용자산 규모가 일부 과다함.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비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중기가용자산규모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음.

3. 존치평가 총평

□ 금강수계관리기금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2년 제정)에 근거하여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다. 하류 물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170원/톤)을 부과하여 재원을 조성하며, 2025년 기준 총 사업비 1,222억원 규모로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토지매수, 수변녹지조성관리, 오염총량관리 등 14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본 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으며, 대청댐 BOD는 2007년 이후 18년간 ‘매우좋음(Ia)’ 등급을 안정 유지하고 있다. 통합물관리로의 정책 전환에 대응하여 2023년 법 개정으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에 추가하고,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4개 신규 용도를 신설한 것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이나, 2026년 예산에는 야적퇴비 관리사업(1억원) 외 신규 용도에 대한 별도 사업이 충분히 편성되어 있지 않아 확대된 기금 용도가 실질적 사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금의 50.5%(589억원)가 오염자부담 영역인 환경기초시설에 과다하게 투입되는 측면이 있으며, 수변녹지(신규조성 0.7%), 생태하천복원(기금의 0.7%) 등 다수 사업의 설치목적 기여도도 저하되어 있다.

□ 금강수계관리기금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자체수입을 보유하고 있어, 재원조성방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물이용부담금(자체수입의95.8%)이라는 안정적인 법정부담금을 기반으로 자체수입비중이 110.77%(‘21~‘28년 평균)로 적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의존도는 0%로 재정자립도가 높다. 반면 중기가용자산은 67,029백만원으로 적정 범위(-18,903 ~ -4,816백만원)를 크게 초과하는 상태이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중기가용자산 규모의 점진적 적정화가 필요하다. 신규사업(야적퇴비 관리사업 등) 발굴 및 기존 사업비 확대를 통해 사업 투자를 강화하고, ‘27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주민지원 사업(햇빛소득, 히트펌프 사업 등) 등 신규사업을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중기가용자산이 중장기적으로 적정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연차별 투자계획과 연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본 기금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상수원보호 규제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존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현행 기금은 오염자부담 영역인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기금의 50.5%)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 지원이 과다한 측면이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에서도 일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업구조의 명확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기금은 존치를 전제로 하되, 기금 용도의 재정렬, 환경기초시설 지원 기준의 합리화, 성과 기반 관리체계 도입을 조건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금강수계(특히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기금의 설치목적은 유효하나, 현행 기금은 오염자부담 영역의 사업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과다 지원하는 측면이 있으며, 다수 사업의 집행 부진·설치목적 기여도 저하 등을 고려할 때 기금 사업 구조의 재검토가 필요함

- 대청댐 BOD가 2007년 이후 18년간 '매우좋음(Ia)' 등급을 안정 유지하고 있어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설치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된 상태임

- 통합물관리로의 정책 전환에 대응하여 2023년 법 개정으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에 추가하고,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취·정수시설 유지관리, 조류 예방·저감 등 4개 신규 용도를 신설한 것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치이나, 2026년 예산에 신규 용도에 대한 별도 사업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아 확대된 용도와 부과체계 간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은 기금 사업비의 50.5%(589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금 지원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물이용부담금은 하류 물사용자가 상류 수질개선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기반하여 부과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는 통상 국고보조와 지방비, 운영비는 하수도 사용료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본 기금은 상류지역의 규제 부담을 고려하여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이나, 환경기초시설 지원 비중이 기금의 50.5%에 달해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마련하여야 하는 비용을 기금에서 과도하게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설치사업은 ‘상・하류지역’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반면, 운영사업은 ‘대청댐 상류지역’으로 한정되어 사업 간 지원 범위의 일관성도 부족함. 운영비(337억원)가 설치비(252억원)를 초과하고 지속 증가하고 있어 지원 수준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수변녹지, 생태하천복원 등 상수원 수질개선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들은 기금 설치목적과의 부합성은 인정되나, 비용효과성 및 중장기 운용계획의 적합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은 예산(74억원)의 83.4%(62억원)가 매수토지 역무대행 사업으로 이 중 84%(52억)는 수변녹지조성 및 녹지조성지 식생관리 위주로 집행되고 나머지 16%(10억)은 지장물 철거, 토지매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25년 다기능홍수터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의 경우 농식품부와의 농지전용협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전액 미집행되었음

- 비점오염저감사업은 ’24년 42억원에서 ’26년 31억원으로 예산이 축소되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20년 지방이양으로 9억원(기금의 0.7%)만 잔존하는 등 설치목적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들의 비중이 합산 13.0%에 불과함. 2020년 존치평가에서 권고된 ’세부사업별 수질개선 효과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재설정’의 이행이 확인되지 않음.

○ 본 기금에서 수행중인 주민지원사업 등은 모두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은 타 기금과의 직접적인 중복은 없으나,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2023~2024년 법・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4개 용도(취・정수시설 유지관리, 조류 예방・저감, 가뭄・홍수 대응, 가축분뇨 공공처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영역으로, 향후 기금에서 사업이 편성될 경우 중복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주민지원사업과 토지매수·수변녹지 사업은 물이용부담금에 기반한 기금 고유의 차별적 기능으로서 타 기금이나 일반회계와의 중복성이 없음

-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개선지원(일부), 오염총량관리 등의 경우 예산 사업으로도 수행되고 있지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과 기금 간에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는 없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수입비중이 적정함.

- 본 기금의 핵심 재원은 법정부담금인 물이용부담금(170원/톤)으로, 자체수입의 95.8%를 차지하며, 금강수계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함.

- 최근5년간('21~'25) 자체수입은 평균0.8% 증가하였으며,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신규 개발 등으로 향후에도 안정적인 수입 유지가 전망됨.

- '21~'28년 자체수입비중 평균은 110.77%로 적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0.00%로 적정함.

- 본 기금은 물이용부담금 등 자체수입원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정부내부수입이나 차입금에 전혀 의존하지 않아 재정 자립도가 높음.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성이 인정됨.

- 금강수계 최종 수요자(하류지역 주민)가 부담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물 제공을 위해 각종 규제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구조로서 부담자와 수혜자 간 연계성이 인정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중기가용자산 규모는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한 상태임.

- 최근5년간('21~'25) 순수지차 및 표준편차를 고려한 적정 기금규모는 MIN -18,903백만원~ MAX -4,816백만원이나, 중기가용자산 규모는 67,029백만원으로 적정 범위를 상회함.

- 이는 최근 재정 운용 여건 및 기금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연차별 지출 규모 조정 등에 따라 중기가용자산 규모가 확대된 측면이 있음.

- 현재의 중기가용자산 규모는 여전히 적정 범위를 크게 초과하고 있어, '27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주민지원 신규사업(햇빛소득, 히트펌프 등) 반영 및 사업비 지출 확대를 통해 중기가용자산을 점진적으로 적정 범위 내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함.

7.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설 치 년 도	2002년	운용개시년도	2002년
주 무 부 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금관리주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본 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존치 필요성이 인정됨. 법 개정으로 기금 용도가 확대되었으나 2026년 예산에는 신규 용도 편성 사례가 없어 향후 신규사업 발굴 등 실체적 확대 노력이 필요함. 또한, 기금 용도의 재정렬, 지원 기준의 합리화 및 성과 기반 관리체계 도입 등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이 적정하지만 중기가용자산규모가 일부 과다함. 연차별 투자계획과 연계한 지출 확대를 통해 중기가용자산이 중장기적으로 적정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함.

3. 존치평가 총평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2년 제정)에 근거하여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다. 낙동강수계 물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170원/톤)을 부과하여 재원을 조성하며, 2026년 기준 총 사업비 2,139억원 규모로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토지매수, 수변녹지조성관리, 오염총량관리, 비점오염저감 등 15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본 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하였으며, 물금 BOD는 2002년 2.6에서 2025년 1.7㎎/L로 개선되었다. 통합물관리로의 정책 전환에 대응하여 2023년 법 개정으로 재해대응, 취수원다변화 등 신규 용도를 신설한 것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치이나, 2026년 예산에는 야적퇴비 관리사업(1억원) 외 신규 용도에 대한 별도 사업이 충분히 편성되어 있지 않아 확대된 기금 용도가 실질적 사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토지매수(우선매수지역 비율 15.8%), 비점오염저감(목표달성도 72.4%) 등 일부 사업의 효과성 제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4대강 사업 이후 8개보 설치에 따른 녹조·마이크로시스틴 문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수준의 기금 사업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이다.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자체수입을 보유하고 있어, 재원조성방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물이용부담금(자체수입의97.2%)이라는 안정적인 법정부담금을 기반으로 자체수입비중이 108.21%('21~'28년 평균)로 적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의존도는 0%로 재정 자립도가 높다. 반면 중기가용자산은 20,381백만원으로 적정 범위(-39,625 ~ -28,763백만원)를 초과하는 상태이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중기가용자산 규모의 점진적 적정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낙동강 수질개선 강화 정책('26~'30)에 따른 취수원 다변화 사업, 재생에너지 확대(햇빛소득, 히트펌프 사업), 녹조 저감 사업 등 신규·확대 사업을 중기사업계획 및 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규모를 증가시키고, 연차별 투자계획과 연계한 관리 체계를 통해 중기가용자산이 중장기적으로 적정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본 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존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 개정으로 기금 용도가 확대되었으나 2026년 예산에는 신규 용도 편성 사례가 없어 향후 신규사업 발굴 등 실체적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금 용도의 재정렬, 지원 기준의 합리화 및 성과 기반 관리체계 도입 등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이라는 기금의 설치목적은 유효하나, 수익자부담 원칙에 기반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오염자부담 영역의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적 괴리, 다수 사업의 집행 부진·설치목적 기여도 저하 등을 고려할 때 기금 사업 구조의 재검토가 필요함

- 물금 BOD가 2002년 2.6에서 2025년 1.7mg/L로 개선되어 안정 유지되고 있어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설치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된 상태임. 다만, 4대강 사업 이후 8개보 설치에 따른 녹조·마이크로시스틴 문제가 심각하며 이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수준의 기금 사업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임

○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은 기금 사업비의 61.2%(1,309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금 지원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물이용부담금은 수계 물사용자가 상류 수질개선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기반하여 부과되고 있으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는 통상 국고보조와 지방비, 운영비는 하수도 사용료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본 기금은 상류지역의 규제 부담을 고려하여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이나, 환경기초시설 지원 비중이 기금의 61.2%에 달해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마련하여야 하는 비용을 기금에서 과도하게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운영비(749억원)가 설치비(560억원)를 크게 상회되고 있어 지원 수준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토지매수, 수변녹지, 비점오염저감 등 상수원 수질개선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들은 기금 설치목적과의 부합성은 인정되나, 비용효과성 및 중장기 운용계획의 적합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토지매수사업은 고오염원(축사) 중심 매수로 전환하고 있으나 비중이 9.7%에 불과하며, 수질개선 효과가 높은 우선매수지역(하천 50m 이내) 매수 비율이 15.8%로 4개 수계 중 가장 낮아 매수 자금의 효과적 배분을 위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함.

-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기금의 1.5%(33억원)에 불과하면서 목표달성도 56.2%로 유일하게 목표를 미달한 사업임. 설치목적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들의 비중이 합산 17.0%에 불과하여 환경기초시설(61.2%)과의 투자 불균형이 심각함.

○ 본 기금에서 수행중인 주민지원사업 등은 모두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은 타 기금과의 직접적인 중복은 없으나,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2023~2024년 법・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용도(재해대응, 취수원다변화 등)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영역으로, 향후 기금에서 사업이 편성될 경우 중복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주민지원사업과 토지매수・수변녹지 사업은 물이용부담금에 기반한 기금 고유의 차별적 기능으로서 타 기금이나 일반회계와의 중복성이 없음.

-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개선지원(일부), 오염총량관리 등의 경우 예산 사업으로도 수행되고 있지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과 기금 간에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는 없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⑵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수입비중이 적정함.

- 본 기금의 핵심 재원은 법정부담금인 물이용부담금(170원/톤)으로, 자체수입의 97.2%를 차지하며, 낙동강수계에서 취수한 원수를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함.

- 최근 5년간('21~'25) 자체수입은 낙동강수계 취수량 및 급수인구 증가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1~'28년 자체수입비중 평균은 108.21%로 적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향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신규 광역상수도 개발 등으로 부과 대상이 확대될 경우 자체수입 증가가 기대됨.

○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0.00%로 적정함.

- 본 기금은 물이용부담금 등 자체수입원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정부내부수입이나 차입금에 전혀 의존하지 않아 재정 자립도가 높음.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성이 인정됨.

- 낙동강수계 최종 수요자(하류지역 주민)가 부담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물 제공을 위해 각종 규제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구조로서 부담자와 수혜자 간 연계성이 인정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중기가용자산 규모는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한 상태임.

- 최근5년간('21~'25) 순수지차 및 표준편차를 고려한 적정 기금규모는 최소규모 -39,625백만원 ~ 최대규모 -28,763백만원이나, 중기가용자산 규모는 20,381백만원으로 적정 범위를 상회함.

- 연차별 투자계획과 연계한 지출 확대를 통해 중기가용자산이 중장기적으로 적정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함.

8.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		
설 치 년 도	2009년	운용개시년도	2009년
주 무 부 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금관리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관 리 방 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평가결과 요약표

1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본 기금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제도적인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됨.

2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적정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2,205.4%로 기준치를 초과하여 적정함. 총수입 대비 정부내부수입과 차입금 비중은 0%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적정함.

3. 존치평가 총평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부터 제31조를 근거로 설치된 기금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자체,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있다. 재원은 관리사업자의 납입금,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정부 외 출연금・기부금, 기금운용 수익, 기타 대통령령상 수입금으로 구성된다.

□ 2008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공포를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2009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설치와 공단 설립으로 실제 운영 단계에 들어갔으며, 2025년 법과 시행령 전반의 주무 부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되었다. 현재 시행령은 기금의 용도를 보다 구체화하여 인가・허가 준비와 기획・관리・평가 사업까지 포함하고, 기금계정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정과 사용후핵연료 관리계정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26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업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처분시설운영, 방사선안전관리),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조성, 관리시설 확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개발(R&D), 정책지원 및 홍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지원, 방폐기금운영 인건비・관리비, 그리고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금융기관 예치로 구성되어 있다.

□ 본 기금의 자체수입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이자수입, 방폐물관리비용 수입 등으로 안정적인 자체수입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의 비중 역시 2,205.4%로 적정하다. 정부 내부수입과 차입금 비중은 0%로 적정하다. 본 기금은 지속적으로 적립해나가는 기금으로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은 평가 실익이 없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의 범위가 운반・저장・처리・처분, 관리시설의 부지선정・건설・운영, 조사・분석, 홍보, 연구개발・인력양성 등 폭넓게 규정되어 있고, 기금도 이러한 관리사업과 그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설치목적의 유효성이나 사업 주체의 적합성은 기본적으로 인정된다. 사업의 유사・중복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원을 발생자로부터 마련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 사업이라는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금목적의 유효성이 인정됨.

○ 다만 일부 사업이 포괄적 목적만 제시하고 있어, 실제 2026년 예산과 연결되는 직접 목적이 잘 드러나지 않음.

- 예를 들어, ‘방사성폐기물홍보’ 사업과 처분시설운영의 환경친화단지 운영, 그리고 고준위 PA 사업 등 유사한 사업이 여러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홍보’의 구체성을 보완하여 사업의 목적의 유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전관리사업 등 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 예산과 비교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인건비 지원이 많이 늘어나, 사업이 목적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과 사업의 목적의 중복성 및 유사성이 있는 타 기금은 없다고 판단됨.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 수입 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이자수입, 방폐물관리비용수입 등으로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과거5개년('21~'25년) 및 향후3년('26~'28년) 누적 자체수입 합계는 경상지출 대비 2,205.4%로 적정함.

○ 본 기금의 '21~'28년 누적 차입금 및 정부내부수입비중은 0%로 적정함.

- 차입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내부수입은 공자기금예탁원금 회수액으로 이를 제외하면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0%임.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9. 석면피해구제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		
설 치 년 도	2011년	운용개시년도	2011년
주 무 부 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금관리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관 리 방 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평가결과 요약표

1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조건부존치	분담금률의 산정에 관한 근거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석면피해분담금률을 매년 고시하며, 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에 반영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조건으로 존치함. 또한, 현재 기금의 운용과 재정운용 등을 고려할 때 분담금률 인하 등 수입규모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 정부출연금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하나, 중기가용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음.

3. 존치평가 총평

□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석면피해구제법」에 근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의 설치 및 조성(같은 법 제24조), 기금의 용도(같은 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지출하고 있다. 현재 이 기금은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으로 운영되며, 구제급여의 지급과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급된다.

□ 본 기금은 석면피해구제법에 근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석면 사용의 전면 금지(2009년)에도 불구하고 잠복기가 긴 석면 피해의 특성으로 신규 피해자가 계속 발굴되는 상황이므로, 기금의 목적은 유효하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석면 피해 환자가 증가하면서(2020~2024년), 2024년에 산업계의 일반분담금률을 높이고, 환특회계의 전입금을 증액하였다. 그러나, 2025년 이후 신규 인정자 수는 다시 감소하여 2025년 기준 약 180억 원의 추가 여유자금이 발생하였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법령 제32조에 따라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분담금률은 정부 출연금액, 예상되는 구제급여의 지급액, 전년도까지 적립된 분담금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매년 고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정추계는 이전 추계치에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판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는 산업계와 정부의 정보접근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재정 부담에 관한 예측 가능성에도 한계가 있다.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 정부출연금 및 차입금 비중이 적정하나, 과다한 중기가용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 본 기금의 목적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법령에 근거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분담금률의 산정에 반영된 정부 출연금액, 예상 구제급여의 지급액, 전년도까지 적립된 분담금의 총액, 그 밖에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비용에 근거하여 매년 기업의 분담금률을 공개해야 한다. 이때,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지정・고시)은 단순히 분담금률과 적용기간, 시행일, 유효기간만 제시하고 있으나, 분담금률의 산정에 관한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하며, 이는 법령 제27조에 근거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한다. 둘째, 석면 기금은 직·간접적으로 석면 사용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기업이 ‘공유책임의 원칙’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이 부담하는 일반분담금과 정부의 특별회계 전입금, 기업의 분담금률 등 수입규모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석면피해구제법에 근거하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석면 피해의 잠복기가 길어 석면 피해자가 계속 신규 발굴되는 상황이므로, 기금의 목적은 유효함.

-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설치' 하였음.

-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초래함. 이러한 질병은 발병 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례비 등을 국가가 지급함.

○ 기금의 용도는 구제급여의 지급,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기술원에 대한 출연, 법 제51조에 따른 업무를 위임·위탁 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및 출연금, 기금의 조성,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등이며(법령 제25조), 실제 내역 사업이 석면피해구제급여와 석면건강영향조사, 기금 운영 등으로 구성됨.

- 본 기금에서 운영 중인 내역 사업은 모두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며, 구제급여의 상세항목(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 역시 국내 유사한 다른 제도(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살생물제품피해구제, 환경오염피해구제 등)와 다른 국가(예, 프랑스, 일본, 영국, 호주, 미국 등)의 사례와 비교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됨.

○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인원이 최근 감소했으나(2025년 2,933명), 질병별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면 2045년에 유병자는 정점(4,033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코로나19와 결합한 갑작스런 유병자 증가로 산업계 분담금 요율을 늘리고, 특별회계 전입금을 증가시켰으나, 최근 유병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요율과 전입금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 등 재정관리의 한계가 있으며, 유병자에 대한 추계와 이를 반영한 구제급여 소요액 추계 등이 비정기적으로 이뤄졌음. 향후 유병자(연령, 질환, 생존 기간 등)와 구제급여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운용방향을 결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형평성과 분담금 요율, 특별회계 전입금 등 수입 규모 전반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해당사항 없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 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비중도 적정함.

- 본 기금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분담금, 특별회계전입금 및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된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의 2025년 자체수입비중은 117.48%이며, 분석기간(2021년 ~ 2028년) 동안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도 90.74%로 적정한 수준임.

- 일반분담금률의 인상으로 본 기금의 자체수입비중은 2023년 87.06% 수준이었으나, 2025년 117.48%로 급격하게 증가함.

- 본 기금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분담금 등으로 구성된 자체수입 등과 환경개선특별회계전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재원을 이용하여, 석면피해구제급여 및 석면건강영향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어 수입재원과 기금사업간의 직·간접적 연계성이 인정되나,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부담하는 일반분담금은 수입재원과 기금간의 직접적인 연계성이 높지 않음.

○ 본 기금은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이 없으므로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이 적정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규모는 적정함.

- 본 기금의 적정규모는 최소기준 -3,448백만원, 최대기준 21,660백만원으로 평가되며, 중기가용자산은 32,913백만원으로 과다함.

- 본 기금의 특별회계전입금은 “석면피해구조법 제2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전입금으로 “공유책임의 원칙”하에 정부·지자체·산업계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 중 정부의 부담분이 지속적으로 전입되는 것이므로 기금 적정규모 산정 시 자체수입과 같은 성격으로 분류하여 평가함.

- 본 기금은 차입금 등 부채가 없어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0.00%임.

1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설 치 년 도	2002년	운용개시년도	2002년
주 무 부 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금관리주체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2. 평가결과 요약표

1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본 기금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상수원보호 규제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제도적 존치 필요성이 인정됨. 여유자금이 총지출의 49.1%에 달하여 기금 규모 대비 사업 수요가 현저히 부족함. 따라서, 기금 용도의 재정렬, 환경기초시설 지원 기준의 합리화, 성과 기반 관리체계 도입 등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2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 정부출연금 및 차입금 비중이 적정하지만 중기가용자산규모가 일부 과다함.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비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중기가용자산규모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음.

3. 존치평가 총평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2년 제정)에 근거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다. 수계 물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170원/톤)을 부과하여 재원을 조성하며, 2026년 기준 경상사업비 899억원, 여유자금운용 885억원 포함 총지출 1,803억원 규모로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토지매수, 수변녹지조성관리, 오염총량관리 등 13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본 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주암댐·장흥댐 등 주요 상수원이 '좋음(Ⅰb)' 등급을 안정 유지하고 있다. 통합물관리로의 정책 전환에 대응하여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취·정수시설 유지관리, 조류발생 저감 등 신규 용도를 신설한 것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치이나, 2026년 예산에 신규 용도에 대한 별도 사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확대된 기금 용도가 실질적 사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토지매수(우선매수지역 비율 41.2%), 비점오염저감(신규설치 0원) 등 다수 사업의 설치목적 기여도도 저하되어 있다. 총지출 중 여유자금이 885억원(49.1%)에 달하여 기금 수입의 절반 가까이가 사업에 투입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자체수입을 보유하고 있어, 재원조성 방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물이용부담금을 기반으로 자체수입비중이114.8%('21~'28년 평균)로 적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의존도는 0%로 재정 자립도가 높다. 반면 중기가용자산은 94,083백만원으로 적정 범위(-8,889 ~ -1,113백만원)를 크게 초과하는 상태이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중기가용자산 규모의 점진적 적정화가 필요하다.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햇빛소득마을 사업 확대 및 퇴적물 준설사업 등 신규사업('26 ~ '30 중기사업계획에 3개 사업 반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경상지출을 증가시키고, 연차별 투자계획과 연계한 기금 운용 관리를 통해 중기가용자산이 중장기적으로 적정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본 기금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상수원보호 규제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존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본 기금은 존치를 전제하고 주민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지원 기능의 분리, 비용부담 원칙의 재정립, 기금 용도의 재정렬, 여유자금 규모의 적정화, 지원 기준의 합리화 및 성과 기반 관리체계 도입 등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개선이라는 기금의 설치목적은 유효하나, 현행 기금은 오염자부담 영역의 사업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과다 지원하는 측면이 있으며, 여유자금 과다 및 다수 사업의 설치목적 기여도 저하 등을 고려할 때 기금 사업 구조의 재검토가 필요함

- 주암댐·장흥댐 등 주요 상수원이 '좋음(Ib)' 등급을 안정 유지하고 있어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설치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된 상태임

- 통합물관리로의 정책 전환에 대응하여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취·정수시설 유지관리, 조류발생 저감 등 신규 용도를 신설한 것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이나, 2026년 예산에 신규 용도에 대한 별도 사업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아 확대된 용도와 부과체계 간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 이를 차치하더라도 2026년 예산에 신규 용도에 대한 별도 사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법적 용도 확대가 실질적 사업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총지출 1,803억원 중 여유자금이 885억원(49.1%)에 달하여 기금 수입의 절반 가까이가 사업에 투입되지 않고 있음

○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은 사업비의 26.6%(239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 지원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물이용부담금은 수계 물사용자가 상류 수질개선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기반하여 부과되고 있으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는 통상 국고보조와 지방비, 운영비는 하수도 사용료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본 기금은 상류지역의 규제 부담을 고려하여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이나, 하수관로 사업이 '24년 29억원에서 '26년 155억원으로 급증하여 설치예산의 79.4%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하수도 정비 비용을 기금이 대신 충당하는 것으로 지원 수준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토지매수, 수변녹지, 비점오염저감 등 상수원 수질개선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들은 기금 설치목적과의 부합성은 인정되나, 비용효과성 및 중장기 운용계획의 적합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가 사업비의 38.8%(349억원)로 4개 수계 중 가장 높은 비중이나, 수질개선 효과가 높은 우선매수지역(하천 50m 이내) 매수 비율이 41.2%에 불과하여 매수 자금이 수질보전에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 비점오염저감사업은 11억원으로 신규 설치가 0원이며 운영 위주로 전환되어 있음. 4개 수계기금 중 유일하게 2개 수계를 통합 운영하는 구조적 특성상 영산강수계에 상수원이 없어(모든 상수원이 섬진강수계 소재) 영산강 본류의 수질개선 투자 유인이 구조적으로 약한 상태임

○ 본 기금에서 수행중인 주민지원사업 등은 모두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은 타 기금과의 직접적인 중복은 없으나,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용도(취・정수시설 유지관리, 조류발생 저감 등)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영역으로, 향후 기금에서 사업이 편성될 경우 중복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주민지원사업과 토지매수·수변녹지 사업은 물이용부담금에 기반한 기금 고유의 차별적 기능으로서 타 기금이나 일반회계와의 중복성이 없음

-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개선지원(일부), 오염총량관리 등의 경우 예산 사업으로도 수행되고 있지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과 기금 간에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는 없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수입비중이 적정함.

- 본 기금의 핵심 재원은 법정부담금인 물이용부담금(170원/톤)으로, 주암호·동복호 등 영산강·섬진강수계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함.

- '21 ~ '28년 자체수입비중 평균은 114.8%로 적정 기준(10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최근5년간('21~'25) 자체수입은 물이용부담금 수납액 안정 기조 하에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0.00%로 적정함.

- 본 기금은 물이용부담금 등 자체수입원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정부내부수입이나 차입금에 전혀 의존하지 않아 재정 자립도가 높음.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성이 인정됨.

- 영산강·섬진강수계 최종수요자(하류지역 주민)가 부담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구조로서 부담자와 수혜자 간 연계성이 인정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중기가용자산 규모는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한 상태임.

- 최근5년간('21 ~ '25) 순수지차 및 표준편차를 고려한 적정 기금규모는 MIN -8,889백만원~ MAX -1,113백만원이나, 실제 중기가용자산 규모는 94,083백만원으로 적정 범위를 크게 상회함.

- 연차별 투자계획과 연계한 지출 확대를 통해 중기가용자산이 중장기적으로 적정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함.

11. 전력산업기반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전기사업법 제48조		
설 치 년 도	2001년	운용개시년도	2001년
주 무 부 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금관리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관 리 방 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전력기금사업단

2. 평가결과 요약표

1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본 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제도적인 측면에서 존치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국민의 이익이 간접적인 사업, 중복 우려가 있는 인프라 투자, 오용과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금융지원 사업 등은 세밀하게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본 기금은 자체수입 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수입 비중, 정부 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하지만, 중기가용자산을 과소하게 보유하고 있음.

3. 존치평가 총평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전력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통해 운용되는 핵심 재원으로서 시장 원리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공익적 목적(안전, 보편적 공급, 첨단 R&D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에 설치되었다. 2026년도 기금사업은 총 5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크게 다음의 6대 핵심 분야로 구성된다. 첫째, 전기안전관리 및 이용 합리화(ESS/LiB 등 첨단 설비 안전 기술 및 법정 전기설비 점검), 둘째, 전력수요 관리(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및 하계 수요대비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셋째, 재생에너지 지원 및 보급(발전차액지원, 신재생 보급·융자 지원 및 각종 테스트베드 구축), 넷째, 에너지신산업 육성(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 및 에너지 융복합단지 활성화), 다섯째, 지역 지원 및 보편적 공급(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기본 지원 및 도서·벽지 전력공급), 여섯째, 전력공급기술 기반 연구개발(혁신형 i-SMR, 가동 원전 안전성 향상, 원전 해체, 직류 송배전 등 첨단 전력기술 개발)이다.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58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전력공급 안정화 및 보편적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를 통해 관련 산업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원 안보에 이바지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사업설치 목적의 유효성, 사업 수행 주체의 적합성, 사업의 유사·중복성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기금설치의 목적이 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공익적 목적 지원에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모든 세부·내역 사업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특정 지역 및 기관에 집중되는 사업, ODA와 같이 국민의 이익이 간접적인 사업, 중복 우려가 있는 인프라 투자, 오용과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금융지원 사업 등은 세밀하게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본 기금은 재원 구조의 적정성 측면에서, 재원 조성방법은 적정하며, 차입금 및 정부 내부수입 비중 역시 적정하다. 그러나 중기가용자산은 1,049,414백만원으로 적정 기금 규모를 크게 하회하여 과소한 상태이다. ’27년 이후에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에 따른 경상지출 급증으로 자체수입 비중이 62.21%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며, 차입금 및 정부 내부수입 비중 역시 ’27년 2.2조원, ’28년 2.4조원의 공자기금 예수를 계획하고 있다. 과거 중기가용자산 과다로 인해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율 인하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이후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급증으로 중기가용자산이 과소로 전환된 것으로, 부과율 조정과 지출 계획이 균형 있게 연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된다. '27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지원이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공자기금 예수를 통한 단기 재원 보완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과율의 상향 조정 등 신규 수입 재원 발굴과 함께 중기가용자산이 적정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 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2001년 설립 이후 초기에는 전기사업법의 기본 취지인 전력공급 안정화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후 기후변화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과 연계되어 사업구조가 발전차액 지원 제도 운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지원사업이 기금의 핵심 지출 항목으로 편입되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적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구조로 확장됨. 2026년 기금은 단순 보급을 넘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등 타 법령들과 연계되어 혁신형 SMR, 차세대 그리드, 원전 해체 등 고도화된 기술 개발과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 등 산·학·연 융복합 생태계 구축을 포괄하는 체계로 다변화됨. 이와 같은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전기사업법 제48조와 제49조에서 규정하는 기금 목적의 유효성이 인정됨.

- 다만,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 사업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출연) 사업과 별개로 설계되어 있고, 타 기금 및 지역 사업과의 중복 우려도 있어 특정 대학의 인프라 및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목적보다 ‘국가 전력산업 기반조성’의 목적성이 더 두드러질 수 있게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에너지 ODA 사업은 “우리 기업의 Track Record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 후속 사업 수주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밀하게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의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기금의 반도체특화단지 지원 및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전라남도의 반도체 3축 클러스터 전략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본 기금의 ’혁신형 SMR’, ’원전 해체’, ’원전 안전성 향상’ 등 원자력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고유 목적사업과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며,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SMR 제작지원센터, 시험검사지원센터, 방사선환경실증기반 등 유사한 센터를 산발적으로 구축하는 중복 투자가 의심됨.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⑵ 재원 구조의 적정성

1. 재원 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 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부담금, 융자원금 회수액 및 이자 수입 등으로 구성된 안정적인 자체수입 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과거 5개년(‘21~‘25년) 및 향후 3년(‘26~‘28년) 누적 자체수입 합계는 경상지출 대비 127.83%로 적정함.

- 자체수입의 비중이 ‘26년까지는 175.17%로 매우 높은 편이나, 향후 62.21%로 미흡할 것으로 추정됨. ‘27년 이후에는 신재생에너지 등의 금융지원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자체수입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함.

- ‘27년 이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신규 수입 재원의 발굴(기존 부과율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향후 지출에 대비해야 함.

○ 본 기금의 ‘21~‘28년 누적 차입금 및 정부 내부수입 비중은 10.29%로 적정함.

- ‘21년 ~‘26년까지는 차입금 및 정부 내부수입 비중이 0%였으나, ‘27년 이후 자체수입의 부족으로 인해, ‘27년 2.2조원, ‘28년 2.4조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계획하고 있음.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1,049,414 백만원으로 적정 기금 규모에 비교해 과소함.

- 본 기금의 적정규모는 최소 4,128,783백만원 ~ 최대 6,085,978백만원으로 최소 규모보다 적어 과소한 상태임

○ 중기가용자산이 적정 범위 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함.

- 과거 중기가용자산이 과다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율 인하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사업비의 급증으로 인하여 중기가용자산이 과소로 전환된 점, 향후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과 관련하여 금융지원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2. 한강수계관리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설 치 년 도	1999년	운용개시년도	1999년
주 무 부 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금관리주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본 기금은 상수원 보호 규제에 따른 규제보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제도적 존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오염자부담 영역인 환경기초시설(기금의 46.6%)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기반한 물이용부담금의 지원 수준이 과다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금 용도의 재정렬, 지원 기준의 합리화 및 성과 기반 관리체계 도입 등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 정부출연금 및 차입금 비중이 적정하지만 중기가용자산규모가 일부 과다함.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비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중기가용자산규모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음.

3. 존치평가 총평

□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999년 제정)에 근거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최초의 수계관리기금이다. 하류 물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170원/톤)을 부과하여 재원을 조성하며, 2026년 기준 기금사업비 4,517억원 규모로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토지매수, 수변녹지, 오염총량관리, 친환경 청정사업, 상하류협력지원 등 15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본 기금은 1999년 설치 이후 누적 10조 7,806억원을 조성하여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BOD 1.2mg/L 수준(좋음)으로 안정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기금사업비의 50.2%(2,269억원)가 오염자부담 영역인 환경기초시설에 투입되고, 운영비(1,563억원)가 설치비(705억원)의 2.2배에 달하는 등 지자체 하수처리 비용을 기금이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자체수입을 보유하고 있어 재원조성방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물이용부담금을 기반으로 자체수입비중이 101.8%(‘21~‘28년 평균)로 적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의존도는 0%로 재정 자립도가 높다. 반면 중기가용자산은 40,576백만원으로 적정 범위(-46,657백만원 ~ -5,987백만원)를 초과하는 상태이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중기가용자산 규모의 점진적 적정화가 필요하다. 금년도 중기사업계획 요구 및 단년도 예산심의 대응 과정에서 지출소요를 적극 반영하여 지출규모를 확대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중・장기운용계획(‘26 ~ ‘30) 수립에 맞추어 신규 환경투자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중기가용자산이 중장기적으로 적정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연차별 투자계획과 연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본 기금은 상수원 보호에 따른 규제보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존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수도권 2,600만 시민의 식수원이라는 국가적 중요성에 비추어 기금의 핵심 기능인 주민지원・토지매수・수변녹지 사업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기금은 오염자부담 영역인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 지원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 또한, 기금 용도의 재정렬, 지원 기준의 합리화 및 성과 기반 관리체계 도입 등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기금의 설치목적은 유효하나, 수익자부담 원칙에 기반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오염자부담 영역의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적 괴리, 부과체계 미정비 간의 모순, 다수 사업의 집행 부진・설치목적 기여도 저하 등을 고려할 때 기금 사업 구조의 재검토가 필요함.

- 팔당호 BOD가 1.2mg/L 수준('좋음')을 안정 유지하고 있어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설치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된 상태임.

○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은 기금사업비의 50.2%(2,269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금 지원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물이용부담금은 하류 물사용자가 상류 수질개선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기반하여 부과되고 있으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는 통상 국고보조와 지방비, 운영비는 하수도 사용료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본 기금은 상류지역의 규제 부담을 고려하여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이나, 환경기초시설 지원 비중이 기금의 50.2%에 달해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마련하여야 하는 비용을 기금에서 과도하게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운영비(1,563억원)가 설치비(705억원)의 2.2배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1,280억원)가 단일 최대 항목으로 누적 환경기초시설 투자 4조 9,961억원 중 운영비가 2조 7,903억원(55.9%)을 차지함. 지원 수준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토지매수 사업은 사전 오염원 차단을 통한 수질개선 수단으로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나, 예산 감소 추세에 따라 사업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어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누적 매수면적은 16.8㎢로 대상면적 550.5㎢의 3.1%에 불과함. 매수 건수·면적의 감소 추세는 최근 5년간 토지매수 예산이 '21년 995억원에서 '26년 620억원으로 지속 감액(누계 △37.7%)된 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본 기금에서 수행중인 주민지원사업 등은 모두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은 타 기금과의 직접적인 중복은 없음.

○ 주민지원사업과 토지매수·수변녹지 사업은 물이용부담금에 기반한 기금 고유의 차별적 기능으로서 타 기금이나 일반회계와의 중복성이 없음.

-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개선지원(일부), 오염총량관리 등의 경우 예산 사업으로도 수행되고 있지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과 기금 간에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는 없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수입비중이 적정함.

- 본 기금의 핵심 재원은 법정부담금인 물이용부담금(170원/톤)으로, 자체수입의 95.8%를 차지하며, 한강수계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함.

- 최근 5년간('21 ~ '25) 연도별 자체수입비중은 94.4%→102.8%→110.1%→115.2%→118.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1년 ~ '28년 자체수입비중 평균은 101.8%로 적정 기준을 충족함.

○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0.00%로 적정함.

- 본 기금은 물이용부담금 등 자체수입원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정부내부수입이나 차입금에 전혀 의존하지 않아 재정 자립도가 높음.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성이 인정됨.

- 한강수계 하류 최종수요자(수도권 주민)가 부담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 지원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투입하는 구조로서 부담자와 수혜자 간 연계성이 인정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중기가용자산 규모는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한 상태임.

- 최근5년간('21 ~ '25) 순수지차 및 표준편차를 고려한 적정 기금규모는 MIN -46,657백만원~ MAX -5,987백만원이나, 실제 중기가용자산 규모는 40,576백만원으로 적정 범위를 상회함.

- 과다 원인은 향후3년간 지출계획에 실질적 지출소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발생한 데 있으며, 과거 평가에서도 지속 지적된 사항임.

- 과거 평가에서 중기가용자산 과다 상태가 반복 지적되었으며, 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지원 확대, 주민지원사업 증액 등을 통해 지출 증가 노력을 기울여 왔음. 금년도 중기사업계획 요구 및 단년도 예산심의 대응을 통해 지출소요를 적극 반영하여 중기가용자산이 적정 범위를 유지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운용계획('26 ~ '30) 수립에 맞추어 신규 환경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연차별 투자계획과 연계한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함.

농림축산식품부

13. 양곡증권정리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양곡관리법 제25조		
설 치 년 도	1994년	운용개시년도	1994년
주 무 부 처	농림축산식품부	기금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본 기금은 과거 정부가 양곡 수매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한 양곡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관련 부채를 정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과거 채무의 체계적인 상환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양곡 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존치평가 총평

□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정부 양곡수매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양곡증권, 차관양곡 등의 채무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 1994년에 설치된 기금이다. 기금의 근거법은 「양곡관리법 제25조」이고, 주요 재원은 별도의 수입원 없이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또는 기금운용을 통하여 발생하는 기타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기금이 상환하여야 하는 총부채는 1994년 기금의 설치 시점에 6조 2,005억원이었고, 이후 2025년 말까지 총 2조 4,515억원의 부채를 감축하였으며, 2025년 말 현재 상환하여야 하는 미상환 부채는 3조 7,490억원이다.

□ 본 기금은 과거 양곡증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 중 미상환 원리금과 이자의 상환을 일반 예산과 분리하여 양곡 관련 부채만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흐름을 명확히 하고 부채 정리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체계적인 부채의 상환은 궁극적으로 양곡관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재정적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본 기금은 상환되어야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채 잔액이 존재하고, 기금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기대효과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존치 타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지출이나 비용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과거 정부가 양곡 수매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한 양곡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관련 부채를 정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이 인정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은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에 대한 평가 결과, 본 기금의 중복성·유사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14. 관광진흥개발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관광기본법 제14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설 치 년 도	1973년	운용개시년도	1973년
주 무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금관리주체	문화체육관광부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2. 평가결과 요약표

1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조건부존치	본 기금의 관광산업 진흥 및 해외관광객 유치확대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설치목적은 유효하나,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한계가 확인됨.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재원 기반의 불안정성, 사업구성 및 지원방식의 비효율성, 성과관리체계 미흡 등에 대한 개선을 전제로 조건부존치로 판단함.

2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적정	본 기금은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수입비중은 적정함.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 역시 적정하며, 중기가용자산은 적정한 상태로 보이지만, 이는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채를 가용자산에 포함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며, 자산대비 부채의 비중이 65.74%로 높은 만큼 심도있는 부채관리가 필요함.

3. 존치평가 총평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기본법」 제14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관리·운용하고 있다. 동 기금은 출국납부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융자회수금 등의 재원을 기반으로 조성되며,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기금은 국내관광육성지원,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사업, 관광산업 활성화지원 등 다양한 재정사업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 본 기금의 설치목적 자체는 유효하나, 현행 사업구성 및 운용체계 하에서는 기금 목적 달성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기금 차원의 중장기 운용계획의 정비 및 사업구조 재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의 사업 구성이 관광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타 재정수단과의 기능이 중첩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본 기금은 자체수입비중은 91.58%로 적정하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1~'22년에는 출국납부금이 급감하면서 자체수입비중이 41~43%로 크게 낮아졌으며, '23년 이후 관광산업 회복에 따른 법정부담금 수입 반등으로 정상화되고 있다. 차입금 및 정부내부수입비중은 16.67%로 적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차입금은 코로나19 대응 재원 조달 목적으로 '21~'23년에 집중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이 전부로, '24년 이후 신규 차입 없이 순차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기가용자산은 453,212백만원으로 적정 기금규모 범위 내에 있어 적정한 상태로 보이지만, 이는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채를 가용자산에 포함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며, 자산대비 부채의 비중이 65.74%로 높은 만큼 심도있는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관광산업 수요 증가에 따라 융자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여금 회수 일정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상환 계획의 이행을 통해 중기가용자산이 적정 범위 내에서 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본 기금은 설치목적의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원구조·사업구성·성과관리 측면에서 일부 한계가 확인되며, 기금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건부존치로 판단된다. 향후, 기금 재원구조의 안정성 확보, 사업구성의 전략적 재설계, 지원방식 및 사업운영 체계 개선, 성과관리 및 중장기 운용체계 고도화, 재정수단 간 역할 정립 및 중복 최소화가 필요하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목적(관광사업 효율적 발전·관광 외화 수입 증대) 자체는 경제·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여전히 유효하나, 기금의 재원 기반 및 사업구성 등이 기금의 목적 달성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이 요구됨.

- 동 기금은 관광산업 진흥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기본적인 정책적 필요성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주요 재원(출국납부금) 인하 및 재상향 논의가 병존하여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재원 기반이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음

  * 출국납부금은 '24년 시행령 개정으로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국민 부담 완화 취지) 되었으나, '25년에 상향 입법(7천원→2만원)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과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 필요성이 쟁점으로 제기됨.

  * 출국납부금 인하 및 변동성 확대에 따라 재원 안정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기금의 재원 다변화 및 지출구조 조정 등 중장기 전략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또한, 기금사업 구성 및 운용체계, 주요 성과 측면에서도 목적 달성의 적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구성이 관광사업자 등 공급 중심으로 이루어져 관광수요 창출 및 관련 산업 선순환 구조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일부 지원방식(이차보전, 보조사업 등)은 수요 부족 및 자부담 구조 미흡 등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기금 목적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낮은 사업은 기능 재정립을 통해 기금의 핵심 정책수단 중심으로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달성을 위한 기금사업·일반회계·지특회계 간 재원분담 및 기여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기금의 중장기 운용방향과 정책목표 간 정합성이 불명확한 측면이 존재함

*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에서 밝힌 정부 목표는 '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불, 1인당 국내 여행 일수 15일, 국내여행 지출액 50조원이나, 현재로서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임

* 동 기금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해당 분야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자료 입증이 불충분하고, 기금사업의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기반한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과 사업구성 전략도 미비함

○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목적과 부합성을 높이고, 기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개선이 요구됨

-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사업의 경우, 1973년부터 관광사업자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 융자를 통한 관광사업자 지원 효과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동 사업에서 수요가 부족한 이차보전 운영지원사업은 기금의 목적 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신규 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사업의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사업의 경우, 일반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펀드와 차별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향후 주요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타 펀드와 중복 지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외래관광객 3천만명 유치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숙박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기금의 설치목적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일반·생활숙박업 시설의 품질관리 및 제고를 위한 기금의 지원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사업은 부과·징수 위탁기관에 위탁수수료(징수금액의 4~8%)를 연간 100억원 이상 지급하는 사업으로, 항공권 발권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부과·징수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위탁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위탁방식의 운용 효율성을 검토하고, 실제 업무 부담 수준을 고려한 수수료율의 적정성 점검이 필요함

- 관광산업 융자지원(신용보증기관 출연)사업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을 통해 관광사업체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부터 280억원이 출연되었고, '26년 예산은 5억원이 편성됨. 신용보증사업은 구조적으로 적립금이 누적되는 특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및 활용 기준은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적정 재원 수준 설정과 환류 메커니즘 도입이 필요함

- 기금의 민간 보조사업은 대부분 정액 지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종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 및 수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지원 구조는 재원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금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사업 참여자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최종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지출혁신 추진계획)에서도 관광 분야의 관행적인 보조율 및 지원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이 제시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유사 보조사업 간 보조율 정비 등을 통해 기금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 진흥이라는 특정 정책목적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타 기금과 직접적인 설치목적의 중복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의 사업구성이 관광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로 확대되면서, 특정 재정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불명확해지고 있으므로, 타 재정수단과의 기능이 중첩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관광인프라 조성,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등 영역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지자체 사업과의 역할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중복지원 및 비효율적 요인의 우려가 있음

- 또한, 관광 인프라의 교통 및 연계시설 등 일부 사업은 타 부처 사업과의 기능적 중첩 가능성이 존재함

-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술의관광자원화와 공예문화산업육성은 기초예술을 관광 콘텐츠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문화와 관광의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예술 진흥보다 관광산업 진흥이 주요한 목적으로 평가되며, 본 기금과 분리 운용됨에 따른 구조적 비효용과 지원 공백의 가능성이 존재함

  * 예술의관광자원화 사업은 전통공연예술 등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고 예술축제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예문화산업육성 사업 또한 공예 예술 자체의 진흥보다는 관광산업의 관점에서 산업화·상품화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각 재원별·부처별·주체별로 세부사업 간 유사·중복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와 협의를 추진하고,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 수입 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출국납부금, 카지노사업자납부금 등의 안정적인 자체수입원을 보유하고 있음.

○ 과거 5개년('21~'25년) 및 향후 3년('26~'28년) 누적 자체수입 합계는 경상지출 대비 91.58%로 적정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해외 출국납부금이 점차 회복함에 따라 자체수입 비중이 '21년 44.48%에서 '26년 112.06%까지 상승함.

○ 본 기금의 '21~'28년 누적 차입금 및 정부내부수입비중은 16.67%로 적정함.

- 코로나19의 영향 '21~'23년까지 2.2조원을 차입하였으며, 이후에는 차입금은 존재하지 아니함.

-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보세판매장에서 수령하는 특허수수료이며, 본 평가의 성격상 자체수입으로 분류하여 평가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차입금의 규모는 2.2조원임.

- 코로나19로 인한 출국금지로 기금의 자체수입재원이 부족하여 이를 차입금으로 대체하였으며, 상환은 '30년부터 예정되어있음.

○ '25년말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453,212백만원으로 적정 기금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본 기금의 적정규모는 최소 -150,369백만원 ~ 최대 906,449백만원으로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 다만, 차입금 중 만기도래가 3년 이상 남은 차입금을 현 시점에서의 가용자산에 포함하여 기금이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남.

- 즉, 중기가용자산의 규모는 적정하지만 기금의 차입금의 규모가 2.2조원으로 매우 큼. 자체수입이 안정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자금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15. 국민체육진흥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설 치 년 도	1972년	운용개시년도	1989년
주 무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금관리주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2. 평가결과 요약표

1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본 기금은 체육분야 유일의 공공기금으로서 설치목적이 유효하고, 타 기금과의 차별성 및 세부사업의 설치목적 부합성이 인정되어 존치로 평가함.

2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수입 비중, 정부출연금 및 차입금 비중이 적정함. 중기가용자산규모가 과다하므로 공자기금 예탁규모 확대와 함께 체육기금 설치목적의 달성도를 향상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 편성하여 기금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존치평가 총평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72년 설치되었으며, 1982년 동 법률의 폐지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통합된 이후 1989년부터 운용이 개시되었다. 본 기금은 국민체육 진흥을 통해 국민의 체력 증진과 연대감 형성을 도모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11개 단위사업에 걸쳐 36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예방 중심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 복지 여건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요구되는 현대의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며, 효과적인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수행 중인 36개 세부사업도 모두 기금의 설치목적과 직접적으로 부합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존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본 기금은 세부사업별 중복성 여부 검토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기금이 일부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문화예술분야 기금 통합 및 기능 조정을 통해 재원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본 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경륜·경정 및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기금전입금, 복권기금전입금, 법정부담금, 융자금 및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된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 정부출연금 및 차입금 비중이 적정하다. 다만, 중기가용자산규모가 과다하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모와 신규사업 추진 등 기금사업의 확대를 권고한다.

□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 규모가 과다하므로 추가적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액 증액 및 예탁 기간 확대가 필요하며, 기금의 적정규모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도를 향상할 수 있는 사업의 확대 편성을 권고한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은 여전히 유효함.

- 현대 사회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만성질환 증가, 정신건강 문제의 확대 등으로 국민건강 위험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와 국민건강 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생활체육 활성화가 필요함.

- 또한, 경제 양극화 심화와 취약계층의 체육 접근성 저하 등으로 체육 참여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체육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국민체육 진흥을 통해 국민의 체력 증진과 연대감 형성을 도모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은 현시점에도 유효함.

○ 본 기금은 생활체육 활성화, 전문체육 육성, 체육인 복지사업, 스포츠산업 활성화 등 11개 단위사업에 걸쳐 36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세부사업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함.

- 세부사업별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여 일부 사업의 통합 및 신규사업 추진을 계획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분야 유일의 공공기금으로 사업 영역과 내용 면에서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분야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과의 중복지원 가능성을 재검토함으로써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만약 중복지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있다면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정부 체육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본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다수의 특별법이 존재하고, 국제협약 및 정부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본 기금의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도 인정됨.

○ 스포츠계 인권 보호,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을 통한 가치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상생·협력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가 인정됨.

-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으로 체육인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더불어 선수 인권 친화적인 도핑방지 활동 지원을 통해 스포츠계 인권을 보호함.

-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

- 체육인 복지 서비스와 생활체육 참여 서비스, 도박중독 예방 치유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육단체 지원,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조건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과 활성화 지원을 통해 창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한 가치를 창출하고,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상생·협력을 도모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수입비중도 적정함.

- 본 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경륜·경정 및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기금전입금, 복권기금전입금, 법정부담금, 융자금 및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된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의 2025년 자체수입비중은 158.24%이며, 분석기간(2021년부터 2028년까지) 동안의 평균 자체수입비중도 143.96%로 적정함.

- 본 기금은 경륜·경정사업의 온라인 매출비중 확대 및 프로스포츠 리그 활성화 등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의 지속적 증가로 안정적인 수입확보가 예상되나, 복합 스포츠 아레나 건설사업과 국제대회 개최 지원에 따라 향후 큰 규모의 지출이 예상되므로 면밀한 연도별 자금소요계획 마련이 필요함.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함.

- 본 기금은 분석기간 동안 정부내부수입과 차입금이 없으므로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함.

○ 본 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경륜·경정 및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기금전입금, 법정부담금(중독예방치유부담금), 융자금 및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된 기금재원을 이용하여, 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산업, 장애인체육 육성 및 국제스포츠 역량강화, 도박문제 예방 치유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수입재원과 기금사업 간의 연계성이 인정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규모는 과다함.

- 본 기금의 향후 3년 누적 순수지차는 -657,165백만원에서 -56,326백만원 범위로 수입이 과다한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과거 5개년도의 표준편차를 고려한 적정 기금규모 최대치가 412,430 백만원으로 나타나 현재 중기가용자산은 과다한 수준임.

-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금액 확대('25년말 기준 1조 2,843억 원) 및 스포츠산업 융자 이차보전 사업 병행 등으로 과다한 중기가용자산 규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여전히 중기가용자산의 과다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금액 증액 및 예탁 기간 확대 등이 필요함.

- 또한, 기금의 설치 목적의 달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기금의 적정규모를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함.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국민체력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과 청소년기의 체력 향상과 우수선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청소년 생활체육 및 우수선수 양성지원 분야의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를 권고함.

- 본 기금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0.03%로 낮은 수준임.

16. 문화예술진흥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설 치 년 도	1972년	운용개시년도	1973년
주 무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금관리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 리 방 식		위탁관리기관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조건부존치	기초 문화·예술 생태계 지원은 시장의 기제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렵고, 사회적 가치가 분명한 영역이므로 기금존치의 타당성이 충분하나, 재원 구조의 개선이 필요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본 기금은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체수입비중이 부족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과 중기가용자산 규모가 부적정함

3. 존치평가 총평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상업적 논리만으로는 충분히 활성화되기 어려운 기초예술의 창작 활동 지원과 국민의 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핵심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 본 기금은 기초예술 분야 육성이라는 공적 필요성 측면에서 존치 타당성이 유효하다. 하지만, 현재 2026년 예산 구조상 창작 지원보다는 문화향유 소비지원(바우처)에 과도하게 예산이 편중되는 목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세부사업은 관광 및 산업화 중심의 성격을 띠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또한, 문화산업의 융복합 환경 변화에 맞춰 유사 타 기금 간의 지원 공백 혹은 중복 방지를 위한 연계 체계를 구성해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여러 문화예술 분야가 다양한 형태로 소비되는 최근 문화소비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문화예술 분야별로 기금의 설치 목적이 지나치게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발생하는 비효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본 기금은 자체수입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등의 수입 증가와 민간출연금 및 경륜·경정 수입금액의 법정 전입 등으로 자체수입이 증가하였으나, 경상사업비 또한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비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비중 또한 70%대 수준으로 부적정하다. 중기가용자산 규모는 평가기준상 과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중기가용자산규모 중 49.8%를 골프장이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당분간 매각이 어려운 자산으로, 이를 감안시 중기가용자산 규모는 더욱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 요컨대, 본 기금은 기초예술 생태계 보존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존치 타당성은 명확하나, 향후 이러한 정책적 유효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기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소비 및 관광 중심의 예산 편중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재원 구조 측면에서도 자체수입 확보와 수지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나아가 유관 연관 기금들과의 유기적인 정책 연계를 선제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문화예술분야 기금 통합 및 기능 조정을 통해 재원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목적은 2026년 현재에도 유효함

○ 기초예술 분야는 상업적 수익성이 낮아 시장 기제만으로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특성이 있음

- 민간 자본은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 안목에서 기초예술에 안정적인 투자를 기피함

- 그 결과 시장에 맡겨 둘 경우 예술 창작 생태계가 충분히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1974년 설립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예술인의 경제적 처우가 열악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어 기금의 지원 필요성이 유지됨

- 2023년 예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상당수 예술인이 연소득 1,00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어 예술창작 기초 생태계가 여전히 열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2026년 예산을 보면 기금의 핵심 설치 목적인 기초예술 진흥보다 문화향유 소비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기금 목적과 예산 구조 간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음

- 크게 확대된 소비 바우처 사업의 경우 수요를 견인하여 장기적으로 예술 창작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영향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일부 작품에 크게 편중될 가능성이 있음

-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이 시장 논리가 아닌 기초예술 진흥에 있음을 고려할 때 기초예술 창작과 육성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세부사업 중 예술의관광자원화와 공예문화산업육성의 경우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예술의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 전통공연예술 등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고 예술축제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예술 진흥보다는 관광산업 진흥이 주목적으로 판단됨

- 공예문화산업육성 사업 또한 공예 예술 자체의 진흥보다는 관광산업의 관점에서 산업화·상품화 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과 사업 성격이 인접한 주요 기금은 영화발전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임

- 기금 자체의 설치목적 관점으로 보면 각 기금의 설치 근거와 지원 대상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기금 간 법적인 중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하지만, 실제 기금이 분리 운용됨에 따른 구조적 비효용과 지원 공백의 가능성이 존재함

○ 위에서 지적한 예술의관광자원화와 공예문화산업육성의 경우 기초예술을 관광콘텐츠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의미있는 접근으로 판단함

- 하지만, 두 기금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기초예술을 육성하는 사업과 이를 관광사업화하는 사업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또한, 우수한 기초예술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발전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 기금과 영화발전기금 간에도 상당히 중복되는 경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함

- 기초 창작물의 지원은 본 기금의 영역이나 영상화를 위한 여러 지원은 다시 영화발전기금의 영역이 되는 제도적 분절이 존재함

- 이러한 분절은 특정 과정에서는 어떠한 기금도 지원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복수 기금이 중복 지원할 수 있는 구조적 비효율이 존재함

○ 기금의 법적 설치 목적이 지나치게 분절적으로 규정된 데에 비롯된 이상의 비효율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본 기금과 유사 기금 간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비중이 낮음.

- 본 기금은 자회사 입장료 수입, 예술극장 대여료, 이자수입, 경륜경정 수입금의 법정 전입, 기부금 등의 자체수입재원을 가지고 있음.

- 본 기금의 2025년 자체수입비중은 17.06%로 적정수준 미만이며, 분석기간(2021년부터 2028년까지) 동안의 평균 자체수입비중도 16.66%로 적정수준 미만임.

- 2021~2025년 기간 동안 자회사(골프장) 등의 수입 증가, 코로나19 이후 민간 출연금 및 경륜·경정 수입금액의 법정 전입 등으로 자체수입이 증가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등 경상사업비 증가에도 자체수입률은 소폭 증가하였음.

- 2026~2028년 추계상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일반회계전입금, 복권기금전입금 등의 급격한 증가 등 실현가능성이 낮은 부문이 존재하는 등 추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높은 편으로 차입금은 없으나, 정부내부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정부내부수입은 복권기금전입금(공익사업)과 일반회계전입금, 체육기금전입금으로 구성됨. 정부내부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기금전입금 등의 증가로 2021년 66.65%에서 2025년 75.13%까지 상승하였으며, 분석기간 동안의 평균은 72.58%로 나타나 향후에도 지속 높아질 것을 예상함.

- 기금 자체수입의 상당 부분은 골프장 운영 수익과 이자수입으로 사업과 관련성이 높지 않으며, 타 기금 전입금 등의 정부수입이 높은 편으로 기금의 목적사업과의 연계성이 뚜렷하지 않음.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ㅇ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규모는 과소함.

- 본 기금의 적정규모는 최소기준 935,597백만원, 최대기준 1,011,308백만원으로 평가되며, 중기가용자산은 456,989백만원으로 규모가 과소함.

- 2026년~2028년 큰 폭의 경상지출의 증가로 인한 순수지차 규모의 증가로 적정기금규모 또한 증가함

- 그러나 위 적정규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연도별 수지차에는 복권기금전입금(공익사업)이 자체수입에서 제외되어 있는 반면 이 전입액으로 지출하는 사업비는 경상지출에 포함되어 있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복권기금전입금을 자체수입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며, 복권기금전입금으로 수행하는 바우처 사업은 '25년 기준 전체 경상사업비의 약 58%를 차지함.

- 중기가용자산규모 중 대부분을 골프장(227,722백만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당분간 매각이 어려운 자산으로, 이를 감안시 중기가용자산규모는 더욱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본 기금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9.82%로 적정함.

17. 언론진흥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설 치 년 도	2010년	운용개시년도	2010년
주 무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금관리주체	언론진흥재단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

2. 평가결과 요약표

1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뉴스미디어산업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과 세부사업의 설치목적 부합성은 인정되나, 과거 존치평가에서 반복 권고된 사업구조 조정을 위한 노력이 충분치 않고,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사업내용 및 사무 수행 체계의 유사·중복성이 있어 양 기금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 및 체계적 조정이 필요하며, 결과(outcome) 중심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개선 과제로 요구됨.

2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 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수입 비중과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이 적정함. 중기가용자산규모가 과다하므로 공자기금 예탁, 신규사업 발굴, 주요사업 확대 등의 방안을 통해 중기가용자산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함.

3. 존치평가 총평

□ 언론진흥기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2010년 설치된 기금으로, 신문・인터넷신문・잡지 등 뉴스미디어산업의 진흥과 여론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기금관리주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대행수수료 수입을 통한 법인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뉴스정보유통활성화, 뉴스미디어저널리즘신뢰성 제고, 뉴스미디어디지털혁신지원 등 3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뉴스미디어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세부사업의 설치목적 부합성도 확인되나, 15년간의 기금 운용 과정에서 기금 고유의 기여를 입증할 결과(outcome) 중심 성과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고, 2020년과 2023년 존치평가에서 반복 권고된 사업구조 조정(인프라 비중 축소, 콘텐츠제작지원 확대)이 일부 이행되었으나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점은 기금운용의 실효성과 합목적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본 기금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사업내용 및 사무 수행 체계에서 유사・중복성이 반복 지적되어 왔으며, 언론진흥기금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통한 재정적 연계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양 기금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와 사업 중복 해소를 위한 체계적 조정 또는 통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 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수입 비중과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이 적정하다. 중기가용자산규모가 과다하므로 신규사업 발굴, 주요사업 확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을 통해 중기가용자산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뉴스미디어산업 진흥과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설치목적 자체는 여전히 유효함.

- 언론의 공공재적 역할과 플랫폼 중심 뉴스 유통 구조 고착화에 따른 전통 뉴스미디어의 경영 환경 악화를 고려할 때, 뉴스미디어산업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음.

- 다만, 한국 뉴스 신뢰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바, 이는 정치적 양극화, 언론사 자체의 보도 관행, 플랫폼 생태계 등 기금 외적 요인의 영향이 크므로 기금운용만의 책임으로 귀속시키기 어려우나, 15년간의 기금 운용 과정에서 기금 고유의 기여를 입증할 결과 중심 성과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점은 향후 보완이 필요함.

○ 2020년과 2023년 존치평가에서 반복 권고된 사업구조 조정에 대한 일부 이행 사항이 확인되나 충분하지 않으므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의 합목적성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인프라 관련 사업(뉴스콘텐츠인프라구축 및 뉴스콘텐츠공용인프라구축지원 포함)의 사업비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반면, 저널리즘 품질에 직접 연결되는 뉴스콘텐츠제작지원의 비중은 약 7.8%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됨.

- 인프라구축 사업은 2006년부터 4단계에 걸쳐 20년간 추진되어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종료 시점이나 단계적 축소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본 기금에서 수행 중인 뉴스정보유통활성화, 뉴스미디어저널리즘신뢰성제고, 뉴스미디어디지털혁신지원 등 3개 세부사업은 모두 「신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기금 용도에 부합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사업내용 및 사무 수행 체계에서 유사・중복성이 있어 양 기금 간 역할 조정 또는 통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양 기금의 관리주체가 법률상 구분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동일 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양 기금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2023년 존치평가에서 뉴스콘텐츠생산지원 사업의 사업내용 유사성이 지적되었으며, 기획재정부가 2016년 이래 통합・이관을 지속 권고했으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임.

- 전출금 규모 역시 법령상 기준 없이 매년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구조이므로, 양 기금 간 유사사업에 대한 역할 구분을 명확화하고 전출금 산정 기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 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비중도 적정함.

- 본 기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법인출연금, 정부광고수수료 집행잔액 등으로 구성된 자체수입 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의 2025년 자체수입 비중은 118.02%이며 분석기간(2021년 ~ 2028년) 동안 평균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122.36%로 적정한 수준임.

- 본 기금의 분석기간 동안 자체수입은 평균 33,186백만원 수준으로 안정적이며 경상지출 역시 27,121백만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남.

○ 본 기금은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을 조달하고 있지 않아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이 적정함.

○ 본 기금은 정부광고법 등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법인출연금과 정부광고수수료 집행잔액 등으로 조성된 기금재원을 이용하여 뉴스정보 유통 활성화 사업, 뉴스 미디어 저널리즘 신뢰성 제고 사업, 뉴스 미디어 디지털 혁신지원 등 언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입재원과 기금사업 간의 연계성이 인정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규모는 과다함.

- 본 기금의 적정규모는 최소기준 -4,149백만원, 최대기준 5,759백만원으로 평가되며, 중기가용자산은 56,458백만원으로 과다함.

- 이는 과거 자체수입이 경상지출을 상회하여 여유자금이 기금에 누적됨에 따른 현상으로 신규사업 발굴, 주요사업 확대 등의 방안을 통해 중기가용자산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여유재원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기금은 부채가 없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0.0%임.

18. 영화발전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설 치 년 도	2007년	운용개시년도	2007년
주 무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금관리주체	영화진흥위원회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본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과 중복·유사성을 검토한 결과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본 기금은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하나, 코로나19 이후 영화관 관람객이 회복되지 않아 자체수입 비중이 낮으며, 중기가용자산 규모 또한 과소하므로 추가적인 자체수입원 발굴, 사업비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한 수지 개선을 권고함.

3. 존치평가 총평

□ 영화발전기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치되었고, 상업적 수익성이 낮아 시장 기제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독립·예술영화의 창작 생태계 기반 유지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본 기금은 영화 창작 생태계 육성이라는 타당한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들 또한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 그러나 여러 문화예술 분야가 다양한 형태로 소비되는 최근 문화소비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문화예술 분야별로 기금의 설치 목적이 지나치게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발생하는 비효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영화 향유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근거법상 OTT 영상물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고 있으며, 기금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적 성과 검증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 본 기금은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하나, 코로나19 이후 영화관 관람객이 회복되지 않아 자체수입 비중이 낮으며, 중기가용자산 규모 또한 과소하므로 추가적인 자체수입원 발굴, 사업비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한 수지 개선을 권고한다.

□ 본 기금은 위와 같은 지적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현행 근거법령을 개선하여 급변하고 있는 OTT 영상 생태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 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금 운영 측면에서는 단기·개별 사업 단위의 산출물 위주의 평가가 아닌 기금 전반의 생태계 파급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통합적 성과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나아가 문화·예술 분야의 타 기금들과의 구조적 중복 및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넓은 관점에서 정책의 장기적인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문화예술분야 기금 통합 및 기능 조정을 통해 재원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족한 재정 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체수입원 발굴 및 지출 효율화 등 수지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영화발전기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목적은 2026년 현재에도 유효함

○ 본 기금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독립·예술영화의 경우 상업적 수익성이 낮아 시장 기제만으로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민간 자본은 대자본 기반의 상업영화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어,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독립·예술영화의 경우 안정적인 투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임

- 그 결과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 둘 경우 영화 생태계의 기초에 해당하는 창작 기반이 활성화되기 어려움

○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영화 산업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영화 산업계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위에서 지적한 구조적 문제가 팬데믹 이후 더 악화되었음을 시사함

○ 하지만, 기금의 설치 목적 유효성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영상 관람 환경이 극장에서 OTT 플랫폼으로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 근거법 상 OTT 영상물이 ‘영화’의 범주 내에 온전히 편입되지 않아 기금이 유효하게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고 있음

- 영화 생태계 활성화 및 다양성 확보라는 기금 설립 목적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단위의 성과체계가 아닌 기금 운용 전반을 아우르는 성과체계가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

○ 본 기금에서 수행 중인 세부사업들은 모두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음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은 영화와 비디오물이라는 특화된 영상 매체를 관할하므로, 유사한 기금들과 목적 단위에서의 명시적인 법적 중복은 없다고 판단됨

○ 하지만, 문화·예술 산업 구조가 여러 매체를 아우르는 형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 분야별로 기금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는 더 넓은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받은 기초예술 창작물은 여러 단계를 거쳐 영화를 포함한 여러 콘텐츠로 발전될 수 있음

- 혹은, 본 기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제작되고 유통된 상품이 또 다시 다른 유형의 콘텐츠로 제작되는 경우 여러 기금이 존재함에도 지원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복수의 기금이 중복 지원할 수 있는 구조적 비효율이 존재함

○ 기금의 법적 설치 목적이 지나치게 분절적으로 규정된 데에 비롯된 이상의 비효율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본 기금과 유사 기금 간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2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 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체수입 비중은 2/3 이하로 부족한 수준임.

- 본 기금은 영화관입장권 부담금,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익 등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의 2025년 자체수입 비중은 26.57%이며, 분석기간(2021년 ~ 2028년) 동안 자체수입 비중은 41.65%로 2/3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자체수입 확대 및 경상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 필요

- 본 기금의 분석기간 동안 자체수입은 평균 29,579백만원 수준으로 발생하며 경상지출은 93,537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음.

○ 본 기금은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이 적정함.

- 본 기금분석기간 동안 평균 차입금 및 정부내수입비중은 41.62%로 나타나 적정하나, 2025년 63.11% 등 체육기금 전입급 증가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자체수입원 확대 등을 통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분석기간 중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영화관입장권부과금 수입이 감소하여 2022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80,000백만원을 차입함.

- 또한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의 전입이 추계에 반영되어 있음.

○ 본 기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영화기획개발지원, 영화제작지원, 영화유통지원, 영화정책지원 등의 영화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입재원과 기금사업 간의 연계성이 인정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규모는 과소함.

- 본 기금의 적정규모는 최소기준 163,426백만원, 최대기준 263,398백만원으로 평가되며, 중기가용자산은 8,345백만원으로 과소함.

- 다만, 모태펀드 출자금액 3,120억원이 장기투자자산(2035년 투자기한)으로 분류되어 중기가용자산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할 필요.

- 코로나19로 감소한 영화관입장권부과금 수입 등이 2025년 대비 2026년 50% 증가한다는 추계 하에서도 중기가용자산이 과소하게 나타나고 있어 추가적인 자체수입원 발굴(OTT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등), 사업비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하여 연도별 수지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 본 기금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0.48%로 적정한 수준임.

법 무 부

19.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조		
설 치 년 도	2011년	운용개시년도	2011년
주 무 부 처	법무부	기금관리주체	법무부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기금의 목적성 사업의 지출 비중을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할 필요가 있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적정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수입비중, 정부출연금 및 차입금 비중이 적정하고, 적정규모의 중기가용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3. 존치평가 총평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정의와 용도 등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법령 제6조는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범죄피해자보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과 「범죄피해자보호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이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예, 성평등가족부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이 기금은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 본 기금은 5대 강력범죄와 신종 범죄 등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기금의 목적은 유효하다. 그러나, 기금의 직접 목적 사업보다 간접 목적 사업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효성이 우려된다. 즉, 전체 기금 중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치료비, 생계비, 간병비 등,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는 전체 기금의 15% 수준으로, 기금의 합목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 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비중도 적정하다. 다만, 최근 강력범죄 감소로 벌금이 감소하고, 사회봉사 대체집행 제도가 시행되는 등 안정적인 자체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분석 기간 자체수입이 경상지출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고 중기가용자산도 충분하므로, 경상지출과 향후 중기가용자산 수준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고도화 등 국정과제 관련 사업과 수요조사를 통한 기금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재원인 벌금의 상당부분은 교통범죄와 경제범죄인데, 수입재원의 대상 벌금은 강력 범죄의 피해자로 한정되므로,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이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본 기금은 법령과 대통령령의 지출 용도에 적합한 세부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출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법령에 근거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와 지원’ 사업에 대한 지출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장기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므로, 급여 지급 후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종결 처리하는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구조금에 대한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 부적정한 구조금에 대한 환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이 기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근거하며, 강력범죄와 신종 범죄 등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기금 목적은 유효함.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조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 하였음.

- 최근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강력범죄 역시 끊임없이 발생함. 이러한 환경 변화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또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안정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의 설치는 여전히 유효함.

○ 범죄피해구조금의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범죄피해구조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고의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에 지급함. 이런 이유로, 가해자로부터 배상은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긴급복지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함. 다만, 중복에 대한 수급 관리는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만 제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급을 받는 피해자 일부는 양쪽에서 중복 수급할 가능성이 있어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 구조금 지급 신청 단계에서 배상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구조금 지급 이후 가해자가 배상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환수 금액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후관리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명시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범죄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기금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만 한정되므로,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과 우울 등에 관한 지원(예, 정신 건강, 통합사례관리 등)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등에 대한 현금 지원은 지방검찰청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장기적인 영향에 노출될 때 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강력 범죄에 대한 통합적인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이 기금은 강력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긴급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사업에 포함될 수 있으나, 기금 단위 중복성은 없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 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비중도 적정함.

- 본 기금은 형사소송법상 벌금수납액, 구상금 등으로 구성된 안정적인 자체수입 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의 2025년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106.06%이며, 분석기간(2021년 ~ 2028년) 동안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103.00%로 적정한 수준임.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함.

- 총수입에서 정부내부수입 비중은 2025년과 분석기간 동안 0%로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함.

- 향후에도 정부내부수입과 차입금 없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본 기금은 벌금 수납액의 8%로 이루어진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재원을 이용하여 범죄피해자 치료, 자립지원, 신변보호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이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수입재원과 기금사업 간의 간접적인 연계성은 인정되나, 수입재원인 벌금의 상당부분은 교통범죄와 경제범죄인데 반해 기금사업은 대부분 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으로 수입재원과 기금사업 간의 세부 항목간 연계성이 낮으므로 수입재원을 지원 대상 피해와 관련된 범죄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ㅇ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규모는 적정함.

- 본 기금의 적정규모는 최소기준 39,300백만원 ~ 최대기준 61,341백만원으로 평가되며, 중기가용자산은 58,404백만원으로 적정함.

- 본 기금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0.00%로 안정적임.

산 업 통 상 부

20. 무역보험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무역보험법 제30조		
설 치 년 도	1968년	운용개시년도	1969년
주 무 부 처	산업통상부	기금관리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

2. 평가결과 요약표

1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공적 무역보험의 정책적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고 세부사업의 설치목적 부합성 및 무역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금으로서의 고유성 등을 종합할 때 기금 존치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중소기업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 로드맵 보완, 채권관리 실효성 제고, 동일 국가에 대한 수출입은행과의 리스크 관리 협업체계 강화, 신규사업 성과지표 수립 등이 개선 과제로 요구됨.

2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적정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218.78%로 적정함. 총수입 대비 정부내부수입과 차입금 비중은 2.92%로 적정하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34.36%로 적정하며 중기가용자산 또한 적정함.

3. 존치평가 총평

□ 무역보험기금은 무역보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1968년 설치된 기금으로, 국제 무역거래 관련 손실위험을 보험·보증 형식으로 담보하여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정부 출연금과 보험료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공적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2025년 역대 최대 268조원 지원, 이용기업 5.3만개 등 설치목적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공적 무역보험의 정책적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며, 5개 세부사업은 모두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무역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금으로서 타 기금과의 직접적 중복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의 적정 목표 및 로드맵 보완, 채권관리 실효성 제고, 동일 국가에 대한 수출입은행과의 리스크 관리 협업체계 강화, 신규사업의 성과지표 수립 등이 개선 과제로 요구된다.

□ 본 기금의 자체수입은 보험료, 회수금(대위변제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기금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원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기준치를 초과하여 적정하다. 총수입 대비 정부내부수입과 차입금 비중은 차입금이 없는 등 적정하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과 중기가용자산 또한 적정하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여전히 유효하며, 공적 무역보험제도 운영을 통한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이라는 과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됨.

- 무역보험기금은 1968년 수출보험법 제정 이후 수출지원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기능해 왔으며, 2025년 역대 최대 268조원 지원, 이용기업 5.3만개 등 기금 설치목적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됨.

- 과거 존치평가(2020년, 2023년)에서 두 차례 연속 '중소기업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이 권고된 바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중소중견기업 지원실적이 2021년 66.6조원에서 2025년 108.9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일정 수준의 상향 노력이 확인되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의 명확한 적정 목표 수준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또한, 2025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구상채권 회수율 30.6%, 대외채권 추심 회수율 4.2% 등 채권관리 실효성이 낮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으므로, 기금의 양적 성장에 상응하는 질적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함.

○ 본 기금에서 수행 중인 무역보험금지급사업, 무역보험신용정보채권관리사업, 무역보험 IT운영사업, 중소기업수출지원기반강화사업, 무역보험환급금등사업 등 5개 세부사업은 모두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함.

- 무역보험금지급사업은 단기무역거래,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 등으로 구성되어 기금의 핵심 기능인 대외위험 보장과 금융조달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 무역보험신용정보채권관리사업은 보험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나, 전술한 채권회수 실효성 지적을 감안하면 예산 증가분이 회수율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가 필요함.

- 중소기업수출지원기반강화사업 내 ONE-STOP센터 인프라 구축 신규사업은 설치목적에 부합하나,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성과지표(KPI)의 조기 수립이 필요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은 무역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금으로, 기금 자체의 설치목적이 직접 중복되는 타 기금은 존재하지 않음.

- 무역보험법에 근거한 공적무역보험제도의 운영은 타 기금이나 예산에서 수행하지 않는 고유 기능임.

○ 다만, 한국수출입은행과 중장기수출금융 영역에서 기능적 유사성이 존재하며, 역할 구분의 명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증과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수출보험은 지원 형태는 상이하나 해외 바이어 채무불이행 시 공적기관이 손실을 부담한다는 경제적 실질에서 유사성이 있으므로, 동일 국가에 대한 양 기관의 리스크 총노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보완할 필요 있음.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는 수출신용보증 영역에서 기능적 유사성이 일부 존재하나, 수출 특화 보증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중복성은 제한적임.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 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보험료, 회수금(대위변제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원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 본 기금의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218.78%(과거 5개년과 향후 3개년의 평균)로 기준치인 2/3를 초과하여 적정함.

- 과거 5개년 자체수입 비중은 204.90%이고 향후 3개년 자체수입 비중이 248.8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향후 3개년 자체수입 중 보험료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임.

○ 본 기금의 총수입 대비 정부내부수입과 차입금 비중은 2.92%임.

- 차입금은 없으며, 정부내부수입은 대부분 일반회계전입금임.

- 과거 5개년 정부내부수입 비중은 4.29%이고 향후 3개년 자체수입 비중이 1.28%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반회계전입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임.

○ 본 기금의 수입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연계성은 적절함.

- 「무역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수입, 대위변제액 수입 등을 기금 주요 수입원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무역보험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수입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연계성은 적절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34.36%로 적정함.

- 차입부채는 없으며, 부채의 대부분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퇴직급여충당부채임. 특히 미경과보험료적립금(2,323,573백만원)이 기금부채의 75%를 차지함.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적정함.

- 본 기금의 적정규모는 최소기준 6,397,756백만원과 최대기준 12,970,727백만원으로 평가되며, 중기가용자산은 7,433,726백만원으로 적정함.

- 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기금으로 분류되지만 보증사업보다 보험사업의 비중이 높아 최근 25년의 보험종목별(단기성보험, 중장기성보험, 신용보증 등) 손실률(보험금지급액/유효계약액)을 활용하여 적정 기금규모를 산출함.

- 2025년 기준 기금부채의 75%를 차지하는 미경과보험료적립금(2,323,573백만원) 중 향후 3년간 환급예상액(62,436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중기가용자산 규모 산출시 가용자산으로 포함하여 계산함.

-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보험약관상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환급할 의무가 있는 부채이나, 향후 3년간 환급예상액(최근 경험률을 통해 추정)을 제외한 나머지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향후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으로 예상되므로 가용자산에 포함하여 기금 중기가용자산의 과소 추정을 방지.

21.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		
설 치 년 도	2015년	운용개시년도	2015년
주 무 부 처	산업통상부	기금관리주체	산업통상부
관 리 방 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평가결과 요약표

1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조건부존치	본 기금은 산업기술의 기술사업화 촉진과 재투자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설치 목적은 유효하나, 기술료 중심 R&D 재투자에서 융자사업 방식의 금융서비스 중심으로 기금 구조가 변화하고, 사업구성의 전략성이 미흡함에 따라 기금의 본래 목적 달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기금 설립 목적의 최소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구조개편을 전제로 조건부존치를 권고함.

2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본 기금은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수입비중은 적정함.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하지만, 중기가용자산을 과소하게 보유하고 있음.

3. 존치평가 총평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재투자 및 산업기술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산업기술혁신계정(혁신계정)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특물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혁신계정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사용・양도・대여・수출)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기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범・협력사업 지원, 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 산업기술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물계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몬트리올 의정서 등)에 대응하여 특정물질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특정물질 저감 및 대체 전환 지원 등 환경 대응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동 기금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2,417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종합하면, 동 기금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과 환경 대응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적 성격의 기금으로, 기술료 기반 재원과 부담금 기반 재원이 결합된 이원적 구조를 통해 산업기술진흥과 환경 규제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 본 기금은 산업기술의 기술사업화 촉진과 재투자 기반 확보라는 점에서 설치목적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4~'27년까지 추진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사업('25년 기준 기금사업의 약 85% 차지)의 신설 및 확대에 따라 기술료 기반 재원순환 중심의 기존 구조와의 정합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기금의 본래 목적(기술료의 R&D 재투자 및 장려·촉진)과의 부합성에 대해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금의 사업구성은 기술사업화, 기반구축, 융자, 정책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전략적 방향성이 불명확하여 기금 목적 달성에 최적화된 구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동 기금은 기술사업화 촉진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고유성이 있으나, 실제 기능 측면에서는 타 정책금융 및 투자수단과의 유사성 및 대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융자방식의 사업은 동 기금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고, 금융공기업 등의 업무와 중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본 기금은 재원구조의 적정성 측면에서, 재원조성방법은 적정하다. 자체수입비중('21~'28년 누적 평균)은 85.53%로 적정하다. 차입금 및 정부내부수입의 비중 역시 32.84%로 적정하다. 하지만 중기가용자산은 -11,665백만원으로 적정기금규모를 하회하여 과소하다. 기금의 경상지출에서 융자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융자사업비의 지출의 규모에 따라 차입금의 증감, 중기가용자산의 변동 규모가 크다. 따라서 철저한 자금계획을 통해 융자사업비 관련 채권의 회수, 채권 회수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등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 본 기금은 재원구조의 불안정성, 융자사업 중심으로의 구조 변동, 사업구성의 전략성 부족, 정책금융과의 기능 중복 및 성과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기금 방식의 타당성 및 존치 필요성이 일정 부분 약화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업화 촉진 및 연구개발 성과의 재투자라는 정책목적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며, 기술료 기반 재원과 연계된 사업화 지원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정책적 고유성이 존재한다. 다만, 현행과 같은 재원구조, 사업구성 및 기금운용 방식이 유지될 경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금의 목적·재원·사업구조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및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존치를 권고한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재투자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술패권 경쟁 및 첨단산업 육성 필요성이 증대되는 환경을 고려할 때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기금의 정책적 정체성이 산업기술개발 전반의 기술사업화 지원인지 국가전략기술 확보인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는 목적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기금의 사업구성은 기술사업화, 기반구축, 융자, 정책연구 등 다양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업구성이 파편적이고, 융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전략적 방향성이 불명확하여,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화 구조로 보기 어려움

- 사업이 산업기술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금 고유의 목표와 사업 간 연계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됨

  * 기술패권 경쟁 및 첨단산업 육성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 사업구성, 성과체계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융자사업은 '27년에 종료 예정임)

- 산업기술정책연구조사사업은 현재 산업부 지원 전반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지양하고, 첨단분야 정책 및 사업화 촉진 등으로 한정하여 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운영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 및 사업화촉진사업은 에너지 기술분야 전용 사업으로 동 기금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임

-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사업은 산업현장의 여성R&D 인력참여 확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측면에서 산업기술 인력 미스매치 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임

- 기술성과활용촉진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인 기술사업화 프로젝트사업은 기술이전, 수요연계, 공동연구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여 차별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개별 요소는 대부분 기존 사업에도 존재하며, 실제 운영에서 기능 간 연계 및 참여 주체 간 협력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내내역사업인 공공연/기업 기술사업화 실태조사 및 환류사업은 기금으로 지원할 근거가 부족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대비 고용 및 매출 성과의 우수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금 지원이 실제 성과에 미친 영향과 정책효과를 입증하기에 제한적임

  * 기금 전체 차원에서 성과관리 및 정책효과 입증 체계가 미흡하여,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성과가 사회적으로 어느 수준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상황임

○ '25년 기준 전체 기금사업의 85% 이상의 규모를 차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의 경우 기술사업화 촉진 및 첨단산업 대응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기금의 목적인 기술료의 R&D 재투자 및 장려·촉진과 부합성은 낮음

- 융자사업 확대 등 사업구조 변화는 기금 목적과 정합성이 낮은 문제가 있고, 기금 방식의 추진 필요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존재함

- 기금이 수행하는 융자사업의 경우 '25년 사업비 1,409억원 대비 85%를 상회하는 1,200억원 수준으로, 기금 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기술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관련 서비스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수행되는 업무로 중복성이 높음

- 또한 직접 융자방식의 신용공여는 금융기관이나 신용공여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로서, 직접 융자 및 회수, 관리에 필요한 금융인프라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기금의 사업영역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됨

- 한편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타 금융공기업 등으로부터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방법은 산업 육성 전반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으로 해결할 부분이며, 기금의 직접 융자방식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을 통한 융자사업 확대는 기술료 기반 재원 순환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융자형 R&D 사업은 기술료 수입으로 환류되지 않아 기금의 기본 재원 구조와도 정합성이 부족함

- 아울러, 융자 지원기업에 대한 R&D 재정지원 중복 여부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서비스) 등 성과정보와의 연계·관리 체계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국가 R&D 지원 및 성과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기금 변경을 통한 신속한 재정투입 사례 등 기금 방식의 유연성이 실제로 활용된 사례가 제한적임

- 특히,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자체 수입(기술료)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본래 취지이나, 현재는 기금 수입 중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비중이 제일 높은 상황이며, 지출 측면에서 융자사업의 규모가 기금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6년 기준으로 융자사업을 제외한 기금사업비는 288억원 수준이며, 기술료 징수 예상액은 468억원임. 융자사업은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기금사업을 통한 기술료 수입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2016)는 기술료의 68.4%가 일반회계 R&D 사업에서 징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기술료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본 기금으로 들어오는 기술료 수입을 범정부 R&D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최근 들어, 기술료가 특정 부처 및 사업이나 재원에 귀속되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범정부적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가 R&D가 다부처 협업, 기술성숙도·단계별 지원, 일반회계·기금·민간재원이 혼합된 구조로 추진되면서, 하나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다수 부처·사업·재원이 함께 투입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음. 이는 기술료를 특정 부처 및 사업이나 재원에 귀속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유발하며, 일반회계와 기금 간 기술료 귀속체계의 운영 기반을 약화시킴. 기술료를 특정 기금 재원으로 운용하는 현행 방식은 재정운용 측면에서 합리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향후 기술료의 범정부적 관리 및 재투자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의 설치목적 자체는 기술사업화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고유성이 존재함

○ 다만, 실제 기능 및 사업영역에서는 타 정책금융 및 재정수단과의 중복 가능성이 높음

- 기금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사업은 첨단전략산업기금, 과기혁신기금(펀드) 등과 지원대상 및 기능이 유사한 구조로 보이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업무 등 타 정책금융과의 대체 가능성이 존재함. 특히 동 융자사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타 정책금융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중복수혜 관리체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또한, R&D 재정지원 및 성과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2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 수입 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기술료수입, 융자원금회수액, 특정물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과거 5개년('21~'25년) 및 향후 3년('26~'28년) 누적 자체수입 합계는 경상지출 대비 85.53%로 적정함.

- 자체수입의 비중이 '21년 248.28%에서 '27년 32.11%까지 감소함. 이는 융자사업비의 지출이 '27년까지 증가함에 따라 자체수입의 비중이 하락하게 됨.

○ 본 기금의 '21~'28년 누적 차입금 및 정부내부수입비중은 32.84%로 적정기준을 하회하여 적정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25년말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11,665백만원으로 적정 기금규모를 하회하여 과소한 상태임.

- 본 기금의 적정규모는 최소 282,258백만원 ~ 최대 419,974백만원 최소범위를 하회하여 과소한 상태임

○ 중기가용자산이 적정 범위 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함.

- 본 기금은 '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융자사업비의 지출의 증가로 인하여 중기가용자산이 적정규모를 하회하고 있음.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채권의 회수방안, 채권회수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등 중기가용자산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철저한 자금관리 계획이 필요함.

재 정 경 제 부

22. 공공자금관리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설 치 년 도	1994년	운용개시년도	1994년
주 무 부 처	재정경제부	기금관리주체	재정경제부
관 리 방 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한국은행

2. 평가결과 요약표

1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공공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의 필요성과 유효성이 인정됨

2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존치평가 총평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1994년 각 기금 및 회계에 분산되어 있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개별 기금별로 운용되던 여유자금의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단일 기금으로 통합 관리하여 공공목적에 활용함으로써 장기투융자 사업의 원활한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본 기금은 국고채 발행, 예수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등에 예탁하거나 국공채 인수, 보증채무 이행 등에 활용하는 자금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등 정부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국채의 발행 및 상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적정성이 확인된다.

□ 본 기금의 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국고채 발행 수입, 예수금, 예탁금 원리금 수입, 국공채 원리금 수입 등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이러한 재원 구조는 정부 재정운용과 국가채무 관리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데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정부 내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공목적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운용을 가능하게 하며, 국채 발행 및 상환의 효율적 관리라는 설치목적에도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부 회계 및 기금 운용을 지원하는 자금중개 기금으로서 대체 가능하거나 유사한 다른 기금이 없다는 점에서 존치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총괄계정, 융자계정, 차관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계정은 모두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됨. 기금은 계정별 기능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공자금의 통합관리, 재정융자 지원, 국채 및 차관의 효율적 관리라는 설치목적에 맞추어 운영되어 기금목적의 유효성이 인정됨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은 정부 예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는 한편, 국채의 발행 및 상환의 효율적인 관리임. 이러한 목적은 기금 설치 당시뿐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함. 국가재정 규모 확대, 국고채 발행 증가, 회계기금 간 자금운용의 복잡성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정부 내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담 기금의 필요성은 지속되고 있음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은 정부 재정 전체의 자금흐름을 관리하는 자금관리기금으로서, 특정 정책분야를 지원하는 개별 목적기금과는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국채 관리와 회계·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는 다른 기금이나 예산사업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존치 필요성이 인정됨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⑵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23. 대외경제협력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조(목적) 및 제3조(기금의 설치)		
설 치 년 도	1986년	운용개시년도	1987년
주 무 부 처	재정경제부	기금관리주체	재정경제부
관 리 방 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한국수출입은행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중요한 축인 유상원조사업의 유일한 재원이며,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므로 존치가 필요함.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성에 따라 주요 사업이 기획, 추진되어야 할 것임.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자체수입 비중은 20.03%로 기준치(2/3) 보다 과소한 상태임. 총수입 대비 일반회계전입금과 차입금 비중은 78.85%로 기준치(50%)를 초과하여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2.74%로 적정함. 중기가용자산은 적정규모보다 과소한 상태임.

3. 존치평가 총평

□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6년에 설치되었다. 본 기금은 정부출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본 기금의 중요정책에 대한 심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하고, 재정경제부가 주무 부처로서 기금을 운용·관리하며, 수출입은행이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본 기금은 개발도상국에 장기간 낮은 금리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수원국의 사회·경제발전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수원국간 경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진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금은 대개도국차관,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대개도국차관지원 및 경협증진자금지원의 4개 단위사업에서 총 11개 세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본 기금은 개발도상국에 장기간 저리로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차관 제공 대상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금목적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본 기금에서 수행 중인 대개도국차관 사업 등 11개 사업은 모두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정을 지원한다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한다. 단, 차관 사업 내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현 평가보고서 내에서 파악이 어려우므로, 각 사업의 개발 및 선정이 기금 목적에 맞게 이뤄지도록 평가, 관리하는 작업은 별도로 필요하다. 또한 최근 확정된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전략 목표 및 신설 우선순위 분야(AI, 문화)에 맞춰 지원 사업이 발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본 기금의 자체수입원은 융자원금 회수액, 이자수입 등으로 자체수입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부적정하다.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비중은 70%대 수준으로 부적정하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적정하나, 중기가용자산 규모는 현저히 과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장기적 재무관리 계획 등 효율적인 부채관리를 권고한다.

□ 최근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수원국의 원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한편 공여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강국

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조성이 중요하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중요한 축인 유상원조사업의 유일한 재원이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전략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협력증진(ODA) 사업 중 2025년 신설된 EDCF 아카데미는 개발도상국 공무원의 석사학위 취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견 무상원조의 성격을 띠고 있는바,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수행 역량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당 학위과정의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대외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함으로써 대외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수원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시장 확대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유효성이 인정됨.

- 최근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수원국의 원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한편 공여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임. 그러나 한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조성이 중요함.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중요한 축인 유상원조사업의 주요 재원이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개발도상국에 장기간 저리로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차관 제공 대상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음.

○ 본 기금에서 수행 중인 대개도국차관 사업 등 11개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정을 지원한다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전략 목표에 맞는 개별 사업이 개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대개도국차관 사업(4개 세부사업),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1개 세부사업) 사업이 기금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개도국차관지원 사업(4개 세부사업)과 경협증진자금지원(2개 사업) 역시 적절히 구성됨.

- 다만, 차관 사업 내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현 평가보고서 내에서 파악이 어려우므로, 각 사업의 개발 및 선정이 기금 목적에 맞게 이뤄지도록 평가, 관리하는 작업은 별도로 필요함.

- 특히 최근 확정된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에 새로 추가된 분야(AI, 문화 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개발협력증진(ODA) 사업 중 2025년 신설된 EDCF 아카데미는 개발도상국 공무원의 석사학위 취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견 무상원조의 성격을 띠고 있는바,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수행 역량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당 학위과정의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대외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본 기금의 목적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금은 없음.

-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과 각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유사한 점이 존재하나, 본 기금은 개도국과의 경제협력과 경제교류에 중점을 두는 유상원조이며, 타 사업은 인적교류와 기술협력 등 인도적・외교적 교류에 중점을 주는 무상원조라는 점에서 역할이 구분됨.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 조성이 미흡한 상태임.

- 자체수입은 융자원금(개도국 차관) 회수액, 융자이자수익,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기금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자체수입으로 한계가 있고 본 기금의 재원조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 특히 융자원금을 차관계약 당시 스케줄에 따라 상환받고 있으나 개도국의 정치·경제 여건변화에 따라 융자원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높아 융자원금 회수를 통한 안정적 자체수입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 자체수입으로 경상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일반회계전입금의 재정적 지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에 의존하고 있음.

○ 본 기금의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20.03%(과거 5개년과 향후 3개년의 평균)로 기준치(2/3초과)에 크게 미달하여 자체수입으로 기금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 본 기금의 총수입 대비 정부내부수입과 차입금 비중은 78.85%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정부내부수입은 전액 일반회계전입금이고 공자기금예수금 차입을 통해 재원을 외부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외부재원 중 일반회계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차입 비중은 각각 70%와 30%(과거 5개년 평균 비중)로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향후(미래 3개년 평균 비중)에는 68%와 32%로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에 대한 비중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 과거 5개년 외부재원의존도는 78.26%이고 향후 3개년 외부재원의존도는 79.51%로 높아지는데 이는 향후 3개년 증가한 융자사업비 및 경상사업비를 대부분 일반회계전입금과 공자기금예수금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임.

○ 본 기금의 수입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연계성은 낮음.

- 본 기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전입금과 공자기금예수금 차입으로 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연계성이 낮음.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2.74%로 적정 수준임.

- 2025년 말 기준 부채규모는 2,610,765백만원이며 이 중 2,607,883백만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차입금에 해당됨. 본 기금이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인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 비중이 큰 반면, 차입금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부채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적정규모 보다 과소한 상태임.

- 중기가용자산은 -61,738백만원으로 적정규모 최소기준 5,186,927백만원과 최대기준 6,007,160백만원의 범위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임.

- 본 기금의 자체수입이 기금의 재원조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정부의 ODA 확대정책에 따른 개도국차관의 집행규모가 증가하여 장기대여금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융자원리금 회수는 장기간 소요되어 중기가용자산의 과소상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임.

- 중기가용자산 규모의 과소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체수입 발굴, 기존 자체수입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함.

통 일 부

24. 남북협력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남북협력기금법 제1조(목적), 제3조(기금의 설치)		
설 치 년 도	1990년	운용개시년도	1991년
주 무 부 처	통일부	기금관리주체	통일부
관 리 방 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수출입은행

2. 평가결과 요약표

1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지속적인 남북 간 상호교류와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촉진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는 기금의 목적은 인정되며, 주요 사업들이 법적 근거 아래 유지되고 있으나, 현재 다수 사업이 상당기간 추진이 안 되며 향후 추진 재개가 불투명하므로 개별사업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2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자체수입 비중은 5.35%로 기준치(2/3) 보다 과소한 상태임. 총수입 대비 일반회계전입금과 차입금 비중은 75.87%로 기준치(50%)를 초과한 상태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68.61%로 재무건전성이 낮은 상태임. 중기가용자산은 적정규모보다 현저히 과소한 상태임.

3. 존치평가 총평

□ 본 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제1조에 따라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에 설치되었다. 본 기금은 정부출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본 기금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심의하고, 통일부가 주무 부처로서 운용을 관리하며, 기금 지원 업무 실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담당한다. 본 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를 근거로 통일기반조성, 남북사회문화교류, 이산가족교류지원, 대북인도적지원,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개성공단조성의 6개 단위사업에서 총12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남북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지속적인 남북 간 상호교류와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촉진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는 기금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며 세부사업 역시 근거법에 따라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으나, 장기간 다수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사업 구성과 운영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단, 인적왕래 협력사업 지원, 이산가족 교류지원, 개성공단 운영 등 자연적 요인으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단시일 내 재개가 불투명한 사업은 존속 여부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남북협력기금과 보완적 성격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별사업에서 중복성이 없도록 협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 본 기금의 자체수입 비중은 5.35%로 기준치(2/3) 보다 과소한 상태이며 총수입 대비 일반회계전입금과 차입금 비중은 75.87%로 기준치(50%)를 초과한 상태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또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68.61%로 재무건전성이 낮은 상태이며 중기가용자산은 적정규모 보다 현저히 과소한 상태이다. 대북 관련 사업의 특수성과 불확실성 등 기금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체수입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비정기성 수입인 민간출연금 수입 확대, 대출금 회수 노력 등 현재의 자체수입 확대를 통해 기금의 자체수입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또한 사업수요의 합리적 예측을 통해 차입금의 차입시기, 차입금액, 만기일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등 부채관리 및 상환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기금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남북대화가 장기간 단절되어 사업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내외 정치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이 급격히 진행될 경우 교류협력을 지원할 예비 재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기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기금사업을 기계적으로 유지하기보다 개별사업의 수요 증감과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재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존속 여부 및 예산 편성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금 사업의 중장기 운영계획을 외부적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남북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지속적인 남북 간 상호교류와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촉진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는 기금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함.

- 남북협력기금법 제1조에 따르면 본 기금의 목적은 남북간 상호교류·협력 및 민족공동체 회복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금의 목적은 남북간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여전한 유효성을 지님.

- 현재 남북대화가 장기간 단절되어 사업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내외 정치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이 급격히 진행될 경우 교류협력을 지원할 예비 재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기금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본 기금의 세부 사업은 근거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대체로 부합하나, 장기간 다수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 구성과 운영의 재검토가 필요함.

- 세부사업 중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교육학술협력 사업 지원, 이산가족교류 활성화 기반조성, 인도지원·협력체계 구축·지원,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판문점 견학 통합지원 등 일부만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됨.

- 나머지 사업은 북한과의 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으나, 정부의 남북 협력 재개 노력에 따라 상향 또는 복구된 예산을 편성한 점은 수긍할 만함.

- 단, 인적왕래 협력사업 지원, 이산가족 교류지원, 개성공단 운영 등 자연적 요인으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단시간내 재개가 불투명한 사업은 존속 여부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기금 사업을 기계적으로 유지하기보다, 개별사업의 수요 증감과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재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존속 여부 및 예산 편성 규모를 결정해야 함.

○ 아울러 기금 사업의 중장기 운영계획을 외부적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기금으로 타 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은 없음.

-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기금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국민체육기금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남북교류 지원이 가능하나 해당 기금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음.

○ 단, 중앙정부의 남북협력기금과 보완적 성격을 지닌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별사업에서 중복성이 없도록 협의와 관리가 필요함.

- 서울특별시 등 17개 특별・광역단체 모두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지자체 재원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기금과 보완적인 관계를 지님.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세부사업이 남북협력기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협의 및 관리가 필요함.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 조성이 아주 미흡한 상태임.

- 자체수입은 융자원금 회수액, 융자이자수익・여유자금 운용수익, 민간출연금 등으로 구성되며, 기금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자체수입으로 한계가 있고 본 기금의 재원조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

- 자체수입으로 경상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일반회계전입금의 재정적 지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에 의한 차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

○ 본 기금의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5.35%(과거 5개년과 향후 3개년의 평균)로 기준치(2/3초과)에 크게 미달하여 자체수입으로 기금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 과거 5개년 자체수입 비중은 17.03%이고 향후 3개년 자체수입 비중이 3.76%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는 남북관계 변화가능성에 대비하여 2026년 이후 매년 1조원대 이상의 경상사업비(무상지원사업) 및 융자사업비(유상지원사업) 지출을 계획하여 세출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 대북 관련 사업의 특수성과 불확실성 등 기금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체수입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비정기성 수입인 민간출연금 수입 확대, 대출금 회수 노력 등 현재의 자체수입 확대를 통해 기금의 자체수입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함.

○ 본 기금의 총수입 대비 정부내부수입과 차입금 비중은 75.87%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정부내부수입은 전액 일반회계전입금이고 공자기금예수금 차입을 통해 재원을 외부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외부재원 중 일반회계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

기금예수금 차입 비중은 각각 24%와 76%(과거 5개년 평균 비중)로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과거 5개년 외부재원 의존도는 68.79%이고 향후 3개년 외부재원 의존도는 79.70%로 높아지는데 이는 향후 3개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경상사업비 및 융자사업비를 대부분 공자기금예수금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기 때문임.

- 최근 남북간 경제교류 및 협력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사업들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반회계전입금의 외부재원으로만 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과거 5개년 공자기금예수금 차입은 차환용도로 발생한 것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을 통한 추가적 재원조달이 실제로 발생한 것은 아님.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차입에 크게 의존하는 재원조달 방법의 구조적 한계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수요의 합리적 예측을 통해 차입금의 차입시기, 차입금액, 만기일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등 부채관리 및 상환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기금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본 기금의 수입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연계성은 낮음.

- 본 기금의 주요 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차입으로 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연계성이 낮음.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68.61%로 재무건전성이 낮은 수준임.

- 2025년 말 기준 부채규모는 2,310,814백만원으로 부채는 공자기금예수금과 그에 대한 미지급이자이며 공자기금예수금에 대한 높은 자금조달 의존도가 본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하고 있음.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적정규모 보다 과소한 상태임.

- 중기가용자산은 196,273백만원으로 적정규모 최소기준 2,824,692백만원과 최대기준 2,891,263백만원의 범위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임.

- 안정적인 자체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공자기금예수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가용자산의 과소상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움.

- 따라서 사업 수요의 합리적 예측을 통해 차입금의 차입시기, 차입금액, 만기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등 부채관리 및 상환에 대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우고 기금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2026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발행일 : 2026. 5.

발행처 : 기획예산처

(044) 214-3212

(044) 214-3233

인 쇄 : (주)삼일기획

(044) 866-3011

2026년

기금존치 평가보고서

기획예산처
기 금 운 용 평 가 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